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http://kn.ssi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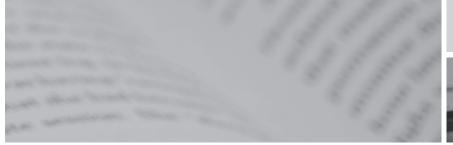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Contents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 제1장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 |
|--------------|--|----|
| | 1. 배경 및 필요성 2.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 3. 사고처리 절차 | 07 |
| | 4. 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시 주의사항5. MRI 건강보험적용 관련 보도자료 | |
| 제 2 장 | 학교안전사고의 이해와 보상책임 | |
| | 1. 교육활동과 보상책임 2. 학교안전사고와 보상책임 3.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안내 | 23 |
| 제 3 장 |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지원안내 | |
| |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제도 안내 | 27 |
| 제 4 장 | 학교안전사고 보상실무 Q & A | 37 |
| 제 5 장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사례 | |
| | 1. 체육시간 | 61 |
| | 2. 실험실습시간 | |
| | 3. 수학여행활동 | |
| | 4. 야외활동 5. 축제활동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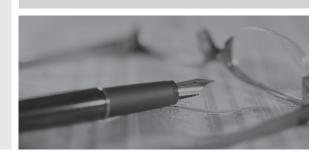




| | 6. 등·하교활동 | 71 |
|----------------|-----------------------------|-----|
| | 7. 놀이시간 | 72 |
| | 8. 급식활동 | 73 |
| | 9. 추락사고 | 74 |
| | 10. 익사(수영장관련)사고 | 77 |
| | 11. 돌연사 | 79 |
| | 12. 체벌 등 교사와 관련된 사고 | 80 |
| | 13. 기타 특이사고 | 80 |
| | 14. 시설 · 물품관련사고 | 81 |
| | 15. 감전사고 | 84 |
| | 16. 체육시설물사고 | 85 |
| | | |
| 제 6 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 89 |
| | 1. 사고예방을 위한 교원의 유의사항 | 89 |
| | 2. 교육활동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 90 |
| | 3. 안전교육의 주요방향 교외 안전교육시 주의사항 | 91 |
| | 4.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의 대처요령 | 91 |
| | | |
| 제 7 장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95 |
| | | |
| 제 8 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37 |
| \II O 0 | 7—7 7 110 2 117 11 CC 62 | 107 |
| | 717 1111 | 4 |
| 제 9 장 | 각종서식 | 157 |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1장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 1. 배경 및 필요성
- 2.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
- 3. 사고처리 절차
- 4. 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시 주의사항
- 5. MRI 건강보험적용 관련 보도자료

제1장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I 배경 및 필요성

-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26)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구축
-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 · 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 무의 효율성 제고
-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 활용

Ⅱ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대상

- 의무가입 기관
-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 되는 평생교육시설
- 임의가입 기관
-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 학교별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 www.schoolsafe.or.kr
- 아이디: 시스템 초기화면에서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 (분교·병설유치원 ID는 별도 부여되어 있음)
- 비밀번호: 초기설정은 1234이며, 학교정보수정에서 변경가능

₩ 사고처리 절차

₩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 · 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우편발송

(<u>공제급여청구서, 영수증원본, 통장사본,</u> <u>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원본</u>) 기본서류(50만원 이하시) + 추가서류(50만원 초과시)



처리종결

- 학부모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불복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 · 결정

불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 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 사항

** 사고발생통지

- 가, 사고발생 후 "지체 없이" 통지
 - ① "지체 없이"의 의미
 - · 발생한 사고를 인지하여 통지하기까지 소요되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간 내의 통지(1주일 내 기준)
 - ② "지체 없이" 통지하지 못한 경우, 보완방법
 - · 사고발생통지서 하단 기타사항 란에 사고통지가 늦어진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③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
 - · "지체 없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72조 제3 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④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사고통지를 작성하고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하여 야 본 공제회로 통보가 됩니다.
 - ⑤ 통보버튼을 클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에 미 통보상태이며 이는 사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 통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완상태"의 의미

- ①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 후 상태에 "보완"이 뜨는 경우
 - · 학교에서 "지체 없이" 사고통지를 아니하거나. 사고 내용상에 보완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 · 사고통보메뉴에서 사고자의 네모박스에 체크 후 "사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 "보완" 내용을 확인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에 맞게 보완을 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미접수" 상태로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가 보완한 내용이 확인되면 "접수" 상태로 바뀝니다.

다 "대상아님"의 의미

- ①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후 상태에 "대상 아님"으로 뜨는 경우
 - ·사고 내용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 · 사고통보메뉴에서 사고자의 네모박스에 체크 후 "사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대상 아님"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으며.
 -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경남공제회(@268-1579)로 연락주세요

- 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한 사고개요 작성
 - ①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작성
 - · 사고발생시간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사고학생 및 목격자 진술에 의거 사고 발생 경위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 6하 원칙에 의거 사고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공제급여를 심사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실관계의 확인 및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공제회 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장소를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고발생경위를 거짓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호에 의거 관할 교육청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제급여 청구

- 가. 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 ①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 ·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청구 클릭 → 사고발생 코드 옆 "조회" 클릭
 - \rightarrow 사고자 클릭 \rightarrow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rightarrow 하단에 "확인" 버튼 \rightarrow 인쇄 \rightarrow 인쇄된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 우측 하단에 학교 직인 날인
 - · 청구인(학부모)란에 서명 또는 날인
 - ② 진단서 워보
 -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약제비계산서영수증 원본(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 ④ 주민등록등본 1통
 - ⑤ 청구인 통장사본 1통
- 나. 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0,000원 미만인 경우
 - ① 공제급여(보전비용)청구서: 청구인(학부모)란에 서명 또는 날인 생략가능
 - ②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③ 청구인 통장사보 1통
- 다. 공제급여 청구시 참고자료
 - ① 청구인(학부모)과 통장예금주와 일치하여야 함.
 - ② 공제급여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 공제급여 청구 시, 공제급여청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영수증 포함)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날인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진료비(약제비)명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영수증 불인정
- ③ 교내·외 특별활동, 방과후 수업,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시에는 특별활동계획서, 훈련계획서 및 각종 대회 참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 공제급여 청구 시 청구구분(최종/중간, 요양/장해/유족/간병급여) 구분을 명확하게 체크하여 야 합니다.
 - · 장기간 치료 또는 수술이 남아 있는데도 최종신청에 체크를 하게 되면 공제급여를 재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에 들러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즉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 시, 보건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사고발생 당일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경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초진기록지 등
- ⑦ 치료목적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및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 산서영수증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라.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

| No | 항 목 | 인 정 범 위 | 비고 |
|----|------------------------|--|---|
| 1 | 상급 병실료 | · 전신화상을 입은 자 · 세균감염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자 · 심한 정신질환자 | 의사소견서 제출 |
| | | · 열창(열상)으로 인한 성형외과 치료비 1회 | |
| 2 | 성형 수술비 | · 화상으로 신체기능장애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 2회 이내 ·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기능회복을 위한 반흔제거술 : 1회 | 의사소견서 제출 |
| 3 | 영상진단료 (MRI,초음파, CT) | · 1회 :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의사소견서 제출 |
| 4 |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 ·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 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공제회에서 요구한 경우 | 각 1부 비용 지급 |
| 5 | 선택진료료 | · 입원 : 전액 · 외래 : 최초 선택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건복지부령 제 174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적용 |
| 6 | 비급여 주사료 | · 무통주사료 : 1회(영양제,비타민제 제외) | |
| 7 | 치아보철료 | · 보철료 : 40만원 이하(2회) · POST(기둥) : 13만4천원(1회) · 임시레진 : 12만원 이하(1회) | 의사소견서 제출 |
| | | · 고정치료비 : 40만원(1회) (심미적 교정비는 미지급) | 의사소견서 제출 |
| | | · 목발: 15,000원 이하 | |
| 8 | 의료보조기 | ·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준함 | 의사소견서 제출 |
| 9 | 응급수송료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2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5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1,000원 추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의 응급 |
| 10 | 응급실 사용료 | · 0f간,휴일(사고당일)에 부상당한 경우 | 증상인 경우 |
| 11 | 국외 치료비 | 국내 진료비 기준 | |

마. 미인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예시

(대표적인 항목만 기재하였으므로 이외에도 미인정하는 비급여진료비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급 여 청구시 참고하여 신청액에서 제외하기 바람)

- ① 상급병실료: 진료받은 병원의 일반실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분
- ② 주사료 : 성장호르몬,인대강화주사,통증완화주사,부종완화주사,연골배양주사, 영양제, 비타민제, 스테로이드제
- ③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 ④ 성형수술: 레이저 및 박피술 1회 초과분
- ⑤ 검사료: 간염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체열검사 등
- ⑥ 재료대: 방수캐스트, 목발·슈즈·팔걸이 1회 초과분
- ① 보장구(보조기): 팔, 다리, 척추, 골반보조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기 기존 착용하던 안경 또는 치아교정기 파손에 따른 구입비
- ⑧ 영상진단료(MRI, CT, 초음파) : 1회 초과분, 부상부위 이외 촬영비
- ⑨ 식대: 환자 1식 초과분, 보호자 식대
- ⑩ 영수차액: 할인액, 미납액, 중복청구액
- ⑪ 진단서대: 청구액이 50만원 이하시. 1부 초과시, 향후추정서 발급비
- ⑩ 처치 및 수술료: 가딕스, 마취흡입제, 1회용 수술포
- ⑤ 응급이송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응급증상인 경우」에 의거 지급 하며 차액은 비인정함
- ④ 기타: 사물함관리비, 수저구입비, CD구입비, 간이영수증, 환자복 등 소모품비

VI MRI 건강보험적용 관련 보도자료





| | | 배 포 일 | 2010년11월12일 | 매수 | 2매 | |
|----------|-----------------------|-------|---------------------|----------|---------------|--|
| OLD WELL |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 베. | 포 즉시 | | |
| 의료평가 | http://www.hira.or.kr | 홍 보 실 | 주종석 부전 | 항, 이덕규 | 10-5742 | |
| Sections | | 중 포 결 | ≈ 705 − 6241 | , FAX 67 | 'AX 6710-5742 | |
| 기근무이 | 시기자 이크그전지기브 | 부 장 | 박 성 영 | 705 | 6 - 6545 | |
| 자료문의 | 심사실, 의료급여심사부 | 차 장 | 강성미 | 705 | 5 - 6561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심사 사례공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척추 및 관절질환에 MRI급여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인정기준 및 착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일 공개하였다.

2010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가 급여 확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되었다.

MRI가 2010년 10월1일 전에는 암,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10월1일 이후부터는 척추질환(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및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손상)에 급여가 확대되어 세부 산정기준이 고시 되었다.

<u>척추 및 관절질환 관련 MRI 심사 조정사례</u>

| 구분 | A사례 | B사례 |
|---------------|---|--|
| 상병명 | • S2200 등뼈의 폐쇄성 골절 • M8150 특발성 골다공증 다발부위 | • M511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 진료기간/ 총진료비 | 입원 10일 | 입원 4일 |
| 청구내역 | 자 47 - 1 (NO473) X 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EXOLENT SPINE 20G PCD SYSTEM 전규격 TYPHOON 전규격 ・자기공명영상진단(HE110006) X 2회 척추-흉추 (수술전・후 각1회) | • 자기공명영상진단(HE111006) X 1회 척추-요추 • 수술 및 처치 없음 |
| 진료내역 | • 흉추(T12)의 압박골절 (Acute T12 compression fx) - Percutaneous Balloon Kyphoplasty 실시: '10년10월14일 - 환자연령(82세) 비교 수술 조기시행 - T-Score: - 4.8 |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4/L5, L5/S1) - radiating pain (+) |
| 심사내역 | ☞ Acute T12 compression fx 부 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진단 (HE110006) X 2회 척추-용추(수술전·후 각1회)는 → 수술전에 촬영한 MRI 1회 인정 ※관련근거: MRI세부산정기준 3.산정횟수 다.에 의거 척추골절 진 단시 1회 인정 |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진단(HE110006) X 1회 척추-요추 → 조정(불인정) ※관련근거: MRI세부산정기준 2. 질환별 급여대상 마~바에 의거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에 조정 |

붙임

■ MRI 세부산정 기준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 2. 질환별 급여대상

가~마. (생략)

바. 관절질환

-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 (2) 골수염
- (3) 화농성 관절염
-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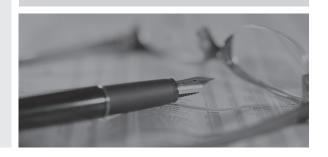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1) 양성종양: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2) 악성종양: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 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 다. 다만, 위 2.의 마~바.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2장

학교안전사고의 이해와 보상책임

- 1. 교육활동과 보상책임
- 2. 학교안전사고와 보상책임
- 3.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안내

제**2**장

학교안전사고의 이해와 보상책임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I 교육활동과 보상책임

1. 교육활동의 형태

-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정규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교육활동의 지정 또는 인정여부

- 위의 활동이 교육활동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야 하며, 각종행사 및 대회 등은 학교장이 인정하여야 함
- 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행하는 활동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학습, 각종 활동이나 행사의 경우도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함.

3. 교육활동 중의 관리감독 범위

- 학교장이 정하거나 인정하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각 종행사 또는 대회 등 경우,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상대상 이 아님
- 예) 수련원에 위탁하여 교육활동을 하거나 교직원등이 인솔하지 않은 수학여행, 해외배낭여행, 운동경기 등 참가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제외
- 학교장의 관리·감독을 보상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고, 학교의 안전배려의무 및 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임.

3.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법 시행령 제2조)

- 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하교 시간
- 등·하교의 보상 개시 및 종료 시점

- · 아파트단지 등 집단 거주지의 경우, 거주하는 동의 공동현관문을 나서면서 보상책임이 개시 되고 현관문에 들어왔을 때 종료되며, 단독주택은 대문을 나서면서 보상책임이 개시되고, 대 문에 들어왔을 때 종료됨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도보 및 차량 등 교통편을 이용하여 등 하교 하는 것을 말함
 - 예1)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거나 등·하교 중 에 학원 등을 가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예2) 등 하교 중 친구들과 놀이터 등에서 노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나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등교하여 교육활동이 개시되 기까지의 통상적인 시간
 - · 일찍 등교하여 학교장의 관리·감독함이 없이 개별 또는 단체로 운동을 하거나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보상책임이 없음.
 - · 교육활동이 끝난 후 학교장의 관리·감독함이 없이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거나 개별 또는 단체로 운동을 하거나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보상 책임이 없음.
- 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방과 후 학교에 남아서 청소를 하거나 그 밖에 활동을 하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 시 보상
- 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현장실습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은 경우, 보상 제외
- 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기숙사생활 중 발생한 사고는 2013. 3. 1부터 보상이 가능(법률 개정)
 - ※ 2013 3 1 이전 사고는 사각지대 공제사업으로 공제중앙회에서 보상
- 바.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에. 집합 및 해산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 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학교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간의 합리적 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 한 등 하교 시간과 같은 개 념으로 인정하여 보상.

Ⅱ 학교안전사고와 보상책임

1. 사고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가. 급격성: 예측불능의 사고로서 직접적 돌발적으로 상해가 발생함을 의미

나, 우연성 : 의도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해를 의미

다. 외래성 : 사고의 원인이 신체의 내부적 요인(병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골절상 등 신체조직의 손상)으로 상해가 발생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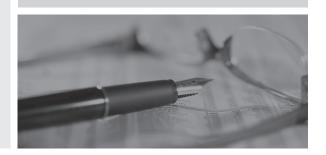
2. 상해와 질병과의 상호관계

- 가. 상해공제에서는 신체의 상해가 담보되고 질병은 부담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해 가 질병을 일으키고, 또 질병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상해의 결과를 중하게 하는 등 이 양자는 상호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는 바, 그 발생 양태와 사건처리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1) 상해사고가 질병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 ① 질병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의 자연적 결과가 된 경우
 - 개에게 물려 공수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부상 개소로부터 파상풍, 패혈증 등의 창상전염병에 걸린 경우 등은 선행한 상해사고와 후에 발생한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해 질병도 상해사고의 결과로서 담보
 - ② 질병의 발생이 우연의 사고와 관계가 없는 경우
 - 사고를 당해 치료 중 당뇨병에 걸려 사망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상해 사고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고 먼저 발생해 있었던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요양급여나 후유장해급여는 지급기가능 하고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됨.

Ⅲ/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안내 -

| 가 입 자 | • 시·도교육감이 일괄가입하여 공제료 납부함 |
|--------------------|--|
| 사업주체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 |
| 보상하는 손해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학생,교직원 제외)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학교관리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피해 |
| 업무대행 서비스 | • 피공제자 대상상담, 학부모와의 합의·절충·중재·소송대행 등의 법률지원, 교직원 대상 경호서비스 시행 |
| 보장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까지 |
| 보 상 범 위 | 인적손해: 1인당 최고 1억원 한도 내 물적손해: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급식과태료: 부과된 과태료(500만원 한도 내) 경호서비스: 5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어린이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배상책임사고 보상 ※ 1사고당 보상한도: 20억원 |
| 신 청 방 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좌측 접속 → 사고발생통보 → 치료완료 또는 중간정산시 → 서류(청구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하여 우편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학교안전공제중앙회(우 140-012) |
| 가입확인증 및 약 관 출 력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좌측 하단 "배상책임공제 가입확인" 배너 클릭 • 정보마당 →법령자료실→17번글 |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3**장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지원안내

-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제도안내

제**3**장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지원안내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요
- ㅇ 공포일
- 법 령 : 2012, 3, 21 - 시행령 : 2012, 3, 30
- 이 시행일
- -2012.5.1
- 2012, 4, 1(법 제16조, 시행령 제18조 피해학생의 보호·지원범위 등)
- ㅇ 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제16조 제6항. 부칙 제2조)

T/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공제회 또는 교육청 선 지급 후 구상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법 제16조 제6항)

👪 직접 청구

•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법 제16조 제7항)

Ⅱ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지원범위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 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 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 청구·지급 절차

•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 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1조를 준용(시행령 제18조 제2항)

** 구상권 행사 범위

•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시행령 제18 조 제3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제도 안내

01.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어떤 제도 인가요?

** 학교폭력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 제도개요

-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 담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민법 제750조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학교안전공제회)이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게 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02.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사고통보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작성한 후 학교장 결재 후 "통보버튼" 클릭함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청구방법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폭력피해청구서"를 작성한 후 학교장 결재 후 서 류구비하여 본회로 우편제출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 및「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 치료비 청구시기

-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
- 따라서, 학생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청구하는 것임. 다만, 치료비가 과다하여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도 있음

03. 모든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모두 지원되나요?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 심리상담 등 : 교육감이 지정한 의료기관 [표 1]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표 2)

[표1] <mark>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 치유 및 치료 지정병원</mark> (2014.3.현재)

| 합의센터 성원판는미및탑센터 (삼성장원병원) 280-6049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지유, 지료자원 지정 및 자정자원 합의센터 (삼성장원병원) 750-897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지유, 지료자원 지정 및 자정자원 합의센터 (경성대학교병원) 332-262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지유, 지료자원 지정 및 자정자원 전체 | 지원청 | 병원명 | 병원연락처 | 치료 내용 | 협약 방식 |
|--|--------|--------------|--------------|-------------------------|-----------|
| 말라센터 경상대학교병원 | 힐링센터 | | 290–6049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치유, 치료지원 | 지정 및 재정지원 |
| [발당한다] (해맑은정신건강의학과) 332~2022 학교폭격 가비해학생 보호자 치유 및 정서행동특성 고위없고 지유 및 지료지원 | 힐링센터 | | 750–8971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치유, 치료지원 | 지정 및 재정지원 |
| 장원 한마음병원 268-7564 공나르미힐링센터 MOU 창원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 290-6552 공나르미힐링센터 MOU 창원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 274-2332 정신과진료 지정 및 재정지원 참원 지해보내자병병원 548-7700 정신과진료 지정 및 재정지원 진주 경상대학병원정신건강과 750-8087 공나르미힐링센터 MOU 진주 현빛신경정신과 741-1515 소아청소년기상에 단순지성 전체 | 힐링센터 | | 332–2622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 치유, 치료지원 | 지정 및 재정지원 |
| 정원 삼성창원병원 290~6652 꿈나르미힐링센터 MOU 창원 미음과마음정신과의원 274~2332 정신과진료 지청 및 재정지원 창원 진해언세시당병원 548~7700 정신과진료 지청 및 재정지원 진주 경상대학병원정신건강과 750~8087 | 도교육청 | 국립부곡병원 | 520-2542 | | 업무협약체결기관 |
| 창원 미음과미음정신과의원 548~7700 정신과진료 지정 및 재정지원 찬유 경상대학병원정신각과 750~8087 꿈나르미힐링센터 MOU 진주 한빛신경정신과 741~1515 소아청소년기장애 단순지정 동영 적십자병원 644~8901 신체작치료 단순지정 사천 한마음병원 82~3311 심리치료 단순지정 간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강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강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강해 해맑은 정신과의원 322~2622 심리치료 MOU 말양 영남병원 33~8102 명양 영남병원 354~8102 꿈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가제 가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기제대학병원 636~8680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기제대학병원 636~8680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기제대학병원 636~2187 신체작치료 단순지정 가제 가제대학병원 636~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가제 가제대학병원 636~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가제 가제대학병원 636~2187 전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행원 863~2201 신체적 시교적 치료 단순지정 난청 참병사원병원 863~2201 신체적 시교적 치료 단순지정 산청 신청보건의로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선청보건의로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연명가장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업연결 가장 (시원학원임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작업연결 가장 (시원학원남산당산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작업연결 | 창원 | 한마음병원 | 268-7564 | 꿈나르미힐링센터 | MOU |
| 장원 진하면세시공병원 548-7700 정신교진료 지정 및 재정지원 진주 경상대학병원정신건강과 750-8087 꿈나르미힐링센터 MOU 진주 한빛신경정신과 741-1515 소아청소년기장에 단순지정 통영 적십자병원 644-8901 신체적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사천 한마음병원 832-3311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조우금강병원 330-03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김해 화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해맑은 정신과의원 332-2622 심리치료 MOU 밀양 영남병원 354-8102 꿈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기제 건세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기제 기계당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기제 거제대병원 636-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가제 거제배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량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 지정 함상 참정원병원 정신과 200-8000 심리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량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상 참정원병원 330-1800 심리치료 연계기관 의령 기량병원 330-1800 심리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량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성 참정원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 지정 함성 기상원기용원병원 1577-7512 전체적치료 단순 지정 함성 기상원병원 363-2201 신체적 시료로 단순 지정 한참 시설창원병원 863-2201 신체적 시료로 단순 지정 한참 기성강원원원 970-7500 신체적 지료 단순 지정 산청 간성장원병원 963-4352 신체적 지료 단순 지정 한양 함당성실병원 963-4352 신체적 지료 단순 지정 한경 함당성실병원 963-4352 신체적 지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가항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흥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가항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 창원 | 삼성창원병원 | 290-6552 | 꿈나르미힐링센터 | MOU |
| 전주 경상대학병원정신건강과 750~8087 꿈나르미힐링센터 MOU 전주 한빛신경정신과 741~1515 소아청소년기장에 단순지정 통영 적십자병원 644~8901 신체적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사천 한미음병원 332~3311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조은금강병원 330~0300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김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해방은 정신파의원 332~2622 심리치료 MOU 밀양 영남병원 334~8102 공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삼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건세대우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기제대우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기제대우병원 635~187 산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이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형병원 753~4100 산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환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환안 참성사용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형병원 753~4100 산체적 치료 단순 지정 환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환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항안 참성사용병원 중32~1975 산체적치료 단순지정 나해적 시대회 원병원 633~100 산체적 지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항안 참성처음병원 중03~2101 산체적 시리로 단순지정 나해적 시리적 지료 단순지정 한참 한동상신병원 963~4352 산체적 지료 단순지정 가장 연대기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장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가장 /가장성기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가장 /가장성기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가장 /가장성기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가장 /가장성기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창원 |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 | 274–2332 | 정신과진료 | 지정 및 재정지원 |
| 전주 한빛신경정신과 741-1515 소이청소년기장애 단순지정 동영 적십자병원 644-8901 신체적치료,심리치료 단순지정 시천 한미읍병원 330-03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김해 조은금강병원 330-03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김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해맑은 정신과의원 332-622 심리치료 MOU 밀양 영남병원 364-8102 광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거제 가재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가제작성보라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가제 가제배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경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당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당시형원원 35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과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시리적 치료 단순지정 나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시리적 치료 단순지정 단순지정 한참 청병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나해 사례병원 863-2201 신체적 시리적 치료 단순지정 나해 사례병원 863-2201 신체적 시리적 치료 단순지정 한참 청병서울병원 863-2201 신체적 시리적 치료 단순지정 한참 한당성신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한참 현당성신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한참 함당성신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가장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신층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가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신층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창원 | 진해연세사랑병원 | 548-7700 | 정신과진료 | 지정 및 재정지원 |
| 통영 적십자병원 644~8901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시천 한미음병원 832~3311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조은금강병원 330~03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김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해부는 정신과의원 332~2622 심리치료 MOU 밀양 영남병원 354~8102 공나르미힐랑센터 단순지정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김성업소이형소년경신과 051~66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거제 건세기학일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대부병원 636~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이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30~1800 심리치료 D순소지청 | 진주 | 경상대학병원정신건강과 | 750-8087 | 꿈나르미힐링센터 | MOU |
| 지천 한마음병원 832~3311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조은금강병원 330~03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김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해맑은 정신과의원 332~2622 심리치료 MOU 밀양 영남병원 354~8102 품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김성엽소아청소년정신과 051~66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거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대우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가제 거제대우병원 636~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참당 참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보형 기정병원 863~2201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산청 신청보원원 863~2201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산청 신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산청 신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지료 단순지정 한당 함당상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안청 신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신리치료 단순지정 안청 신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신리치료 단순지정 한당 함당상심병원 963~4352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한당 함당상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근순지정 한당 함당상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근순지정 한당 함당상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기료로 단순지정 한당 함당상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시리치료 단순지정 한당 함당상시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시리치료 단순지정 한당시병원 환경상시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시리치료 단순지정 한당시병원원 환경상시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시리치료 단순지정 한당시병원원 함상시병원원 963~4352 신체적 치료 시리치료 단순지정 한당시병원원 참당시병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 진주 | 한빛신경정신과 | 741–1515 | 소아청소년기장애 | 단순지정 |
| 급해 조은금강병원 330-03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김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해맑은 정신과의원 332-2622 심리치료 MOU 밀양 영남병원 354-8102 꿈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김상엽소아청소년정신과 051-68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거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대우병원 636-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대우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삼성장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중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863-2201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日상청 기성병원 863-2101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보험 기성병원 863-2201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단순지정 단순지정 인상청원병원 863-2201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인상청 기성병원 863-2201 신체적 시료 단순지정 인상청 신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인상청 인성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인상청 연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기상청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지접연결 | 통영 | 적십자병원 | 644-8901 | 신체적치료, 심리치료 | 단순지정 |
| 김해 최석주 신경정신과 326~3949 심리치료 단순지정 김해 해맑은 정신과의원 332~2622 심리치료 MOU 밀양 영남병원 354~8102 꿈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김상업소아청소년정신과 051~66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거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대우병원 680~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가제 거제배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면계기관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치료 연계기관 양산 당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함안 농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강병원 673~0110 신체적시료로 단순지정 함당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시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시리로 단순지정 한당 참성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한당 함상성병원 963~4352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한당 함앙성병원 963~4352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한당 함앙성병원 963~4352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가장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가장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 사천 | 한마음병원 | 832–3311 | 심리치료 | 단순지정 |
| 김해 해맑은 정신과의원 332~2622 심리치료 MOU 말양 영남병원 354~8102 꿈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가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김상엽쇼아청소년정신과 051~66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가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거제대우병원 680~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가제 거제배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청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대수지점 함양 함앙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앙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앙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가장 연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가장 가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가장 가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김해 | 조은금강병원 | 330-0300 | 신체적 치료 | 단순지정 |
| 말양 영남병원 354~8102 꿈나르미힐링센터 단순지정 가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김상엽쇼아청소년정신과 051~66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가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제 거제대우병원 680~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가제 거제배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0~422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가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가창 /사항시작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김해 | 최석주 신경정신과 | 326-3949 | 심리치료 | 단순지정 |
|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김성엽소이청소년정신과 051-66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거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박병원 680-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백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742-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당 참성처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항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나청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기정병병원 803-422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 김해 | | 332–2622 | 심리치료 | MOU |
| 거제 거제정신과의원 635-7475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김성엽소이청소년정신과 051-668-8680 심리치료 지정 및 재정지원 거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박병원 680-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백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742-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당 참성처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항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나청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기정병병원 803-422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 | 영남병원 | 354-8102 | 꿈나르미힐링센터 | 단순지정 |
| 거제 21세기 한일병원 634-0900 심리치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대우병원 680-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백병원 635-2187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항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한청 반성병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한성 반성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가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 | 거제정신과의원 | 635–7475 | 심리치료 | 단순지정 |
| 거제 거제대무병원 680-8114 신체적지료 단순지정 거제 거제백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항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한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한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한순지정 한송성남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가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 거제 | 김상엽소아청소년정신과 | 051-668-8680 | 심리치료 | 지정 및 재정지원 |
| 거제 거제백병원 635-2187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양산 이이공감소이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항녕 청병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한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한양 합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서)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 | 거제 | 21세기 한일병원 | 634-0900 | 심리치료 | 단순지정 |
| 양산 이어 공감소아정신과의원 051-742-7515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한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한양 합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거제 | 거제대우병원 | 680-8114 | 신체적지료 | 단순지정 |
| 양산 강병구 정신과의원 051-504-3171 정신 치료 연계기관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앙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거제 | 거제백병원 | 635–2187 | 신체적치료 | 단순지정 |
| 양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정신 치료 연계기관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한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항건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가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양산 | 아이공감소아정신과의원 | 051-742-7515 | 정신 치료 | 연계기관 |
| 의령 의령병원 753—4100 신체적 치료 단순 지정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기상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 가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양산 | 강병구 정신과의원 | 051-504-3171 | 정신 치료 | 연계기관 |
| 함안 동서병원 230-1800 심리치료 MOU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청녕 창녕서울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청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건강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지접연결 거창 가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양산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577-7512 | 정신 치료 | 연계기관 |
|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 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의령 | 의령병원 | 753–4100 | 신체적 치료 | 단순 지정 |
| 함안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290~6040 심리치료 MOU 창녕 창녕서울병원 532~1975 신체적치료 단순지정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 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함안 | 동서병원 | 230-1800 | 심리치료 | MOU |
| 고성 고성강병원 673-01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 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 삼성창원병원 정신과 | 290-6040 | 심리치료 | MOU |
| 남해 남해병원 863-2201 신체적 심리적 치료 단순지정 하동 하동삼성병원 880-422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 지정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창녕 | 창녕서울병원 | 532-1975 | 신체적치료 | 단순지정 |
| 하동하동삼성병원880-4220신체적 치료, 심리치료단순 지정산청산청보건의료원970-7500신체적 치료, 심리치료단순지정함양함양성심병원963-4352신체적 치료단순지정거창영대가정의학과945-0055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직접연결거창(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053)653-1004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직접연결거창거창성가족상담소944-1828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직접연결 | 고성 | 고성강병원 | 673-0101 | 신체적 심리적 치료 | 단순지정 |
| 산청 산청보건의료원 970-7500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단순지정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남해 | 남해병원 | 863-2201 | 신체적 심리적 치료 | 단순지정 |
| 함양 함양성심병원 963-4352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거창 영대가정의학과 945-0055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직접연결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하동 | 하동삼성병원 | 880-4220 |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 단순 지정 |
| 거창영대가정의학과945-0055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직접연결거창(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053)653-1004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직접연결거창거창성가족상담소944-1828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직접연결 | | 산청보건의료원 | 970-7500 |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 | |
| 거창영대가정의학과945-0055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직접연결거창(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053)653-1004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직접연결거창거창성가족상담소944-1828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직접연결 | 함양 | 함양성심병원 | 963-4352 | 신체적 치료 | 단순지정 |
| 거창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053)653-1004 심층 상담 및 미술치료 직접연결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 영대가정의학과 | 945-0055 | 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및 병원 연계 | 직접연결 |
| 거창 거창성가족상담소 944-1828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직접연결 | 거창 | (사)한국발달상담연구소 | 053)653-1004 | | |
| | | | 944–1828 | 심층 성 문제 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 |
| | 거창 |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 | 754–1375 | 성폭력 피해 학생 병원 연계 및 상담 | 직접연결 |
| 합천 합천병원 932—4900 신체적 치료 단순지정 | | | 932–4900 | | |

[※] 유의사항 : 병원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 Wee센터 및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문의

【표2】 일시보호 지정기관 (2014.3.현재)

| 연번 | 기관명 | 기관유형 | 과정 | 소재지 | 비고 | 연락처 |
|----|------------------------|----------------------|----------|------------|----------------------|-------------------|
| 1 | 범숙학교 | 사회복지법인 | 중고통합과정 | 창원시 | 연극치료 | 298–1127 |
| 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중학교과정 | 창원시 | 인성치료 | 263–1388 |
| 3 |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 비영리법인 한국청소년희망재단 | 초중고 통합과정 | 경기도 용인시 | 정서 · 행동장애 치료 · 재활 | 070–4420– 1901 |
| 4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진주 · 사천지부 |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중고통합과정 | 진주시 | 난타 | 748-0388 |
| 5 | 해밀학교 | 재단법인 청소년미래교육해밀 | 고등학교 과정 | 창원시 | 미디어 | 256–5388 |
| 6 | 로뎀학교 |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중고통합과정 | 창원시 | 미혼모지원 | 292–4747 |
| 7 | 동해청소년학교 | 사회복지법인 순영 | 중학교과정 | 고성군 | 예술,체험활동 | 673–8586 |
| 8 | 경남미용고등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과정 | 마산시 | 미용 | 251–3102 |
| 9 | 경남보건고등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과정 | 함안군 | 미술치료 | 583–6300 |
| 10 | 밀양영화학교 | 재단법인 밀양영화촌 | 중고 통합과정 | 밀양시 | 영화제작 | 391–7835 |
| 11 | 지리산가랑잎학교 | 학교법인 학림학원 | 중고 통합과정 | 산청군 | 인성교육 | 973–9723 |

04. 치료비가 지원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담 및 치료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법 제58 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

👪 일시보호 기간 : 30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제1항

05. 적용시기? (법률시행전 사고)

** 적용시기

언제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했던지 2012년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모두 해당됨

** 적용시점

지원되는 기간은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최초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과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정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교안전법」제58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06.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나요?

👪 기본 워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상범위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치료비용
-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비용일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 구상시기

피해학생에게 치료비용 등을 지급한 이후 시행하게 되며, 최대 3년 이내에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됨

※「상법」제682조

** 전담인력 구성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구상전담팀 구성
- 전담팀은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 · 도학교안전공제회 까지 확대예정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4**장

학교안전사고 보상실무 Q&A

학교안전사고 보상실무 Q&A

목 차

| 1. 사고발생통지의 시기 | 39 |
|---|----|
| 2. 공제급여(보상금) 청구시기 및 방법 | 39 |
| 3. 사고발생통지의 범위 | 39 |
| 4.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의 범위 | 40 |
| 5.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의 보상여부 | 40 |
| 6.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40 |
| 7. 학교 내 기숙사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 | 41 |
| 8. 질병치료비 지급 대상 | 41 |
| 9.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 41 |
| 10. 학생이 찬 공에 행인이 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42 |
| 11.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 | 42 |
| 12. 학교폭력사고 피해치료비 지원여부 | 42 |
| 13. 등·하교 중 차량에 의한 사고 | 43 |
| 14. 교육활동 중 자해·자살사고 | 43 |
| 15. 사설수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 43 |
| 16. 지도교사가 학생들과 단체로 야외활동 중의 사고 | 44 |
| 17. 수학여행·체험학습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시 | 44 |
| 18. 민영상해보험 가입 시 공제회와 이중 보상여부 | 44 |
| 19. 문화체험을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45 |
| 20. 교내에서 다쳤으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부상이 심해져 며칠 경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45 |
| 21. 조기 등교한 학생이 부상을 입은 경우 | 45 |

01 사고발생통지의 시기



법 제44조 제2항에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개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사고통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주일 이내 사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지연할 경우, 사고발생통 지서 기타사항 란에 지연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법률 제72조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02 공제급여(보상금) 청구 시기 및 방법



위와 같이 사고발생통보한 건에 한하여 치료가 끝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담당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제급여 청구서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수신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길 경상남도교육청(내)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우편번호 641-719)

03 사고발생통지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서"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 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 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 의 활동
- 나, 등 하고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04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시 보상대상이며 통상적인 체류시간을 판단함에는 정규 교육활동의 종료시간, 체류시간 중의 활동 상황, 교사의 체류지시 여부, 교직원의 임장여부, 교직원의 근무시간, 계절, 요일, 피공제자의 신체적 특성, 가정적 특성, 그 외의 사고 발생을 전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05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의 보상여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하여 학교의 시설물 등이 손괴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게 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교육활동 중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하여 직접 피공제자가 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게 됩 니다.

○ 06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 발생한 우발적인 안전사고는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지도교사의 임장지도를 벗어난 교육활동 외 사고이므로 사고학생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집↔학교 간 통상적 경로)

- 증빙서류 :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약도(도면), 현장사진 등
- ※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놀거나 학원을 다녀오다가 일어난 사고, 다른 길로 돌아서 등하고 중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07 학교 내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거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제6호에 의거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에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8 질병치료비 지급 대상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2. 일사병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09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중에 조리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서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결과 학교과실로 판명되고 진료확인서상 "식중독"으로 진단받아야 함(단순 장염, 위장염 등은 인정되지 않음)

유효기간 경과나 부패식품 납품 등 위탁급식업체나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며 직영급식의 경우, 납품받은 식자재가 원인이 되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10

학생이 찬 공에 행인이 부상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학생이 교육활동중 우발적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 질병, 재산상의 손해 등은 본회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에서 실시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11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



교직원은「공무원연금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한「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 열거한 개별법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일교사나 명예교사 등은 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학교폭력사고 피해치료비 지원 여부



학교폭력사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가해자의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차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 간에 분쟁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알린 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 13 등·하교 중 차량에 의한 사고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는「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거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뺑소니 나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국가는 피해자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하여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4 교육활동 중 자해·자살사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이고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또는 신체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Q 15 사설수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보험가입)는'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수련원 등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상기 법률에 의해 수련원이 가입한 개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사설수련원 등과 계약할 때 반드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6 지도교사가 학생들과 단체로 야외활동 중의 사고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 이라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실시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 17 수학여행·체험학습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시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체험학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서 단체여행 시, 여행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교외교육활동 시 학교장은 사전 숙박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차량종합병원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8 민영 상해보험 가입 시 공제회와 이중 보상여부



동일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하여 피해학생부모가 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회와 중복보험에 해당【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1424(2013.3.15)공문참조】 되므로 비례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선 상해보험에서 청구한 후에 차액을 공제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제회는 법률 규정에 의거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9 문화체험을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시 시행령 제2조 제4호"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이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교내에서 다쳤으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부상이 심해져 며칠 경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직후 지도교사의 인지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사고 사실을 사전 담임교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만으로는 학교안전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사고학생이 보건실에 들러 응급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목격자 진술 및 초진챠트 등 증빙서류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임을 입증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21 조기등교한 학생이 부상을 입은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문과 교실을 개방하고 등교하는 학생을 수용하였다면 조기 등교한 학생의 교내 활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목격자 진술 및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22

오후 방과 후 학교운영에 참여한 학생의 보상여부



지도교사가 수업종료(종례)를 선언하면서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대상 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면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하교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23 종례 후 또

종례 후 또는 공휴일에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종료(종례해산)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공휴일에 친구들과 교내에서 놀이 중에 발생한 사고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 및 제6호 의거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4 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보상범위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A초등학교에 인근 B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동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25

학생이 교육활동 중 갑작스런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012. 4. 1부터 시행하는 법 제40조 제2호에 의거 위로금(4천만원 한도)을 지급합니다.

※ 반드시 의학적 부검결과에 의하여 원인불명이 입증되어야 함

26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료 책정방법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시·도공제회는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공제료를 산정, 시·도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최종 결정됩니다.

27 공제급여 청구 소멸시효



「법률 제65조」에 의거"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등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지?



"학교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대상이나 국내 의료수가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의료비용 등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9 동일한 검사를 여러 병원에서 실시한 경우



1차 진료기관의 진단결과 의뢰서에 의해 2차 진료기관으로, 2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담당의사가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이나, 별다른 부상 또는 치료없이 학부모의 진료 불신 등으로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 갑작스런 실신에 따른 치료비



교육활동 중 아무런 사고없이 갑자기 실신을 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하나,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각종 검사비는 본인 질병 치료비 이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1 과다한 호송비의 인정여부



요양급여의 범위에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사고의 발생시간, 장소, 응급치료 병원과의 거리, 사고의 경중, 사고로 인한 보행이나 이동의 가능여부,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호송가능 여부, 치료 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 여러 이송수단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휴일·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발생한 호송비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2 치료비의 중간지급 또는 선 지급



공제급여 청구의 회수 제한이나 요양 중 신청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중간청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치료비를 선 지급하고 종결하나, 그 치료가 가능한 시점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에 의하여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3 기왕증 측정방법



영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질병,부상,장해) 등이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었는가의 여부는 진료의사의 소견서(기여도 측정)에 의할 것이며 공제회는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회가 지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에 기초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4 과실상계의 적용



영 제19조의2 제2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 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에서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인지능 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5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위로금의 지급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 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의 장해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 위자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1급 또는 2급 장해시)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36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는데 학부모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당시에는 병원치료를 받아 중대한 사고로 알고 통지를 하였으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 학부모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통지한 자료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만약 사고발생 통지서를 만약 삭제하시고 싶으시면 본회로 연락하여 접수취소를 한 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사고통보를 하였다고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7

사고통지 해태 또는 허위 사고통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보상의 관계



공제급여의 지급과 과태료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통지하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의거 과태 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공제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고 통지를 한 후에 공제급여청구 를 하여야 합니다

38 합의금의 지급범위



또한 법 제35조제2항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 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 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교사 혹은 학교 측과 피해 학부모간에 법원의 화해 권고로 결정된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이의가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보상액 또는 배상액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의 합의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금은 본회 지급대 상이 아닙니다

39 교육활동참여자의 보상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 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 육활동을 하는 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 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자"인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교사를 보조하여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일일교사, 명예교사 등
- 2. 학교장 승인, 요청에 의해 등 하교 시, 교통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 3. 비영리민간단체회원으로 서면으로 학교장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40 학교급식 종사자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하여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학교장과 시간제 급식 배식원으로 고용계약을 한 종사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없으며,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가입자)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41 외부인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외부인이 학교장의 서면요청으로 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교육활동을 보조하다가 학교안 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학교행사 및 회 의 등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 42 컴퓨터 학원강사가 방과후 수업 중 부상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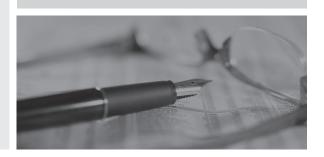
학생이 방과후 수업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학원 강사의 경우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또는 개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43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공제가입자는 경남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kn.ssif.or.kr) 우측 상단 "가입확인서" 배너 클릭하여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5**장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사례

※ 이 사례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자료로 참고하 되, 일부는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본 회에서 보상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제**5**장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사례

체육시간

| 1) 육상 달리기중 사망 사 | ᄀ |
|-----------------|---|
|-----------------|---|

| | (사례 1) 학생신체능력검사중 달리기 하다 사망 | 61 |
|----|--|-----|
| | (사례 2)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마치고 사망 | 61 |
| | (사례 3) 체육수업중 달리기하다 쓰러져 사망 | 61 |
| | (사례 4) 교사체벌중 달리기 하다 쓰러져 사망 | 61 |
| | (사례 5) 체육시간 달리기 하다 쓰러져 사망 | 61 |
| | (사례 6) 체육시간 달리기후 쉬는시간에 쓰러져 사망 | 61 |
| | (사례 7) 체육수업중 달리기하다 본인 지병으로 사망 | 62 |
| | (사례 8) 학생신체능력검사중 본인 지병으로 사망 | 62 |
| | (사례 9) 체력검사중 신체결함으로 사망 | 62 |
| 2) | 육상 달리기중 부상 사고 | |
| | (사례 1) 달리기 중 사지 마비 | 62 |
| | (사례 2) 달리기 후 쓰러져 본인질병 발견 | |
| | (사례 3) 달리기 후 뇌경색 | 63 |
| 3) | 농구경기 중 사망 사고 | |
| | (사례 1) 쉬는시간 농구경기중 심장마비로 사망 | 63 |
| | (사례 2) 쉬는시간 농구경기중 사망 | |
| | (사례 3) 쉬는시간 농구경기중 사망 | |
| 4) | 축구경기 중 사망 사고 | |
| | (사례 1) 축구경기 구경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 | 64 |
| 5) | 축구경기 중 부상 사고 | 04 |
| Ο, | | , , |
| | (사례 1) 축구경기중 머리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사례 2) 축구경기중 우안 실명 | |
| | (사례 3) 축구경기중 좌안 실명 | |
| | (사례 4) 축구경기중 좌안 부상 | 64 |

| 6) | 체육수업 중 사망 사고 | |
|----|----------------------------|----|
| | (사례 1) 체육수업중 기왕증에 의한 사망 | 64 |
| | (사례 2) 체육수업중 심장마비 사망 | 65 |
| 7) | 체육수업 중 부상 사고 | |
| | (사례 1) 철봉에서 떨어져 사지마비 부상 | 65 |
| | (사례 2) 철봉에서 떨어져 경추부상 | 65 |
| 8) | 체육선수의 훈련중 부상 | |
| | (사례 1) 럭비훈련중 사망 사고 | 65 |
| | (사례 2) 체조선수의 훈련중 경추 부상 | 66 |
| | (사례 3) 레슬링 연습중 경추골절 부상 | 66 |
| | (사례 4) 유도 연습중 머리 부상 | 66 |
| | (사례 5) 농구 연습중 다리 부상 | 66 |
| 9) | 기 타 | |
| | (사례 1) 체육수업전 치아부상사고 | 66 |
| | (사례 2) 물구나무 서기중 부상사고 | 66 |
| | (사례 3) 팔굽혀 펴기중 식물인간 | 67 |
| | (사례 4) 수학여행 산행중 사망사고 | 67 |
| | 실험실습시간 | |
| | (사례 1) 과학시간 준비중 실명사고 | 67 |
| | (사례 2) 화산폭발 실험중 화상사고 | 67 |
| | (사례 3) 과학실험중 화상사고 | 68 |
| | (사례4) 자동차 실습중 안구파열 부상 | 68 |
| | (사례 5) 점심시간 실습중 사망 | 68 |
| | (사례 6) 실습중 교사의 과실로 구상금 청구 | 68 |
| | (사례 7) 실습뒤 정리중 화상 | 69 |
| | (사례 8) 실습중 손가락 절단 부상 | 69 |
| | (사례 9) 쉬는시간 기계톱에 손가락 절단 부상 | 69 |
| | (사례10) 과학실험실 청소중 사망 | 69 |

수학여행 관련 사고 (사례 1) 무대 폭죽이 넘어지면서 부상 69 (사례 2) 수학여행 숙소 베란다로 옆방에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 …………… 70 야외활동 중 사고 (사례 1) 체험학습 해산중 자전거 타다 사망 ----- 70 (사례 2) 체험학습중 버스 안에서 넘어져 실명 70 축제활동 중 사고 (사례 1) 축제행사 불꽃놀이 중 폭발로 화상 71 (사례 2) 축제행사 작품작업 중 화상 ----- 71 등 · 하교 중 사고 (사례 1) 하교 중 친구집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 71 (사례 2) 자전거 등·하교중 사망 ----- 71 놀이 관련 사고 (사례 1) 휴식시간중 우안 부상 ----- 72 (사례 2) 표창던지기 중 좌안 실명 ----- 72 (사례 3) 부메랑으로 장난하다 실명 ----- 72 (사례 4) 장난하다 좌안 시각장해 ----- 72 (사례 5) 장난하다 넘어져 "선천성혈관기형"의 발견 ----- 72

(사례 6) 쉬는시간 기절놀이 하다 부상 72

급식 관련 사고

| (사례 1) 급식카트에 의한 사고 | 73 |
|--|------------|
| (사례 2) 급식카트에 치아 사고 | 73 |
| (사례 3) 교사가 끓인 주전자 물에 화상사고 | 73 |
| (사례 4) 장난에 의한 우발적 사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73 |
| (사례 5) 급식통을 운반하다 넘어져 요추 부상 | 73 |
| (사례 6) 배식중 급식통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상 | 74 |
| 추락 사고 | |
| | - , |
| (사례 1) 옥외 화장실 위에 올라가 놀다 추락 | 74 |
| (사례 2) 학교뒤 담 옹벽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다 사망 | |
| (사례 3) 유치원생이 쇼파에서 떨어져 경추골절 | |
| (사례 4) 2층 화장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 |
| (사례 5) 청소중 4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부상 | 74 |
| (사례 6) 실내화 주우려다 우천지붕으로 떨어져 부상 | 75 |
| | |
| (사례 8) 2층 베란다에서 청소하다 떨어져 사지마비 부상 | 75 |
| (사례 9) 2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 추락 | 75 |
| (사례10) 2층 창문 청소하던중 추락 | 75 |
| (사례11) 장해학생이 2층 창문에서 추락 | 75 |
| (사례12) 3층 교실 청소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부상 ····· | 76 |
| (사례13) 3층 교실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골절의 부상 ····· | 76 |
| (사례14) 4층에서 계단난간을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 추락 사망 | 76 |
| (사례15) 2층에서 계단 난간을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 추락 | 76 |
| (사례16) 학교 계단 난간에서 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 | 76 |
| (사례17) 좀비놀이하다 3층에서 추락 | 76 |
| 익사(수영장관련) 사고 | |
| | |
| (사례 1) 중국문화체험활동중 수영하다 익사 | 77 |
| (사례 2) 졸업여행중 수영하다 익사 | 77 |

| (사례 3) 수학여행중 자유시간에 수영하다 익사 | 77 |
|------------------------------------|----|
| (사례 4) 축구부선수의 야외훈련중 수영하다 익사 | 77 |
| (사례 5) 하계훈련중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익사 | 77 |
| (사례 6) 배구선수들이 훈련중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익사 | 78 |
| (사례 7) 하계훈련중 강가에서 수영하다 익사 | 78 |
| (사례 8) 춘계학습중 강가에서 놀다 익사 ····· | 78 |
| (사례 9) 농촌체험학습 중 하천에서 물놀이 하다 익사 | 78 |
| (사례10)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경추부상 ····· | 78 |
| (사례11) 수학여행 중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경추부상 | 78 |
| (사례12) 조정선수의 훈련 중 익사 | 79 |
| (사례13) 선박 항해실습중 배에서 추락하여 익사 | 79 |
| | |
| 돌연사 | |
| (사례 1) 교실로 향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 79 |
| (사례 2)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혈관기형"의 진단 | |
| (사례 3) 교실에서 이동 중 쓰러져 사망 | 79 |
| | |
| 체벌 등 교사와 관련된 사고 | |
| (사례 1) 생활지도 체벌을 한 후 뇌종양 발견 | 80 |
| (사례 2) 교사와 야구게임중 배트에 맞아 실명 | |
| (사례 3) 교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맞아 두개골 골절 부상 | 80 |
| (사례 4) 교사가 휘두른 단소에 맞아 우안실명 | |
| | |
| 기타 특이사고 | |
| | |
| (사례 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 |
| (사례 2) 가을소풍중 뱀을 잡으려다 물려 부상 | |
| (사례 3) 등굣길에 잡아온 도마뱀에 물려 부상 | |
| (사례 4) 현장체험학습중 곰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 | |
| (사례 5) 합숙중이던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 | |
| (사례 6) 넘어지면서 커트칼에 부상 | 81 |

시설 · 물품 관련 사고

| (사례 1) 수련원 사다리 오르다 줄이 끊어져 추락하여 사망 | 81 |
|--------------------------------------|----|
| (사례 2) 강당지붕에 올라간 모형항공기 내리다 넘어지면서 사망 | 82 |
| (사례 3) 친구와 장난치고 달아나다 배구네트 기둥에 부딪쳐 사망 | 82 |
| (사례 4) 방화셔터에 깔려 부상 | 82 |
| (사례 5) 청소중 교실용 스피커가 떨어져 부상 | 82 |
| (사례 6) 기말고사 공부중 선풍기 떨어져 부상 | 82 |
| (사례 7) 빗물막이에 매달려 놀다 떨어져 부상 | 82 |
| (사례 8) 하교중 교통차단 바리케이트에 걸려 부상 | 83 |
| (사례 9) 교내 공사중이던 굴삭기에 치어 부상 | 83 |
| (사례10) 교내 공사분진으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 83 |
| (사례11) 체육시간 휴식중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척추부상 | 83 |
| (사례12) 휴식시간 뛰어가다 나무가지에 눈을 찔려 부상 | 83 |
| (사례13) 쓰레기 소각장의 부탄가스통에 맞아 우안 실명 | 83 |
| (사례14) 복도에서 급하게 뛰다가 유리에 목을 찔려 사망 | 83 |
| (사례15) 교실문 틈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 | 84 |
| (사례16) 돌아가는 세탁기에 손을 넣다 팔 절단의 부상 | 84 |
| 감전 사고 | |
| (사례 1) 학교 변전실에 들어가다 전기감전으로 부상 | 84 |
| (사례 2) 온실청소를 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 | 84 |
| (사례 3) 정수기에 물을 먹으려다 감전으로 부상 | 85 |
| 체육시설물 사고 | |
| (사례1) 축구골대에 깔려 좌측 폐를 절단하는 부상 | 85 |
| (사례2) 축구골대에 깔려 우측 다리 골절의 부상 | 85 |
| (사례3) 축구골대에 깔려 사망 | 85 |
| (사례4) 이동식 핸드볼 골대에 깔려 부상 | 85 |
| (사례5) 그네 타다 그네에 머리를 맞아 사망 | 85 |

체육시간

1) 육상 달리기 중 사망사고

(사례 1) 학생신체능력검사 중 달리기하다 사망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학생신체능력검사 중 마지막 50m 달리기를 하기 위하여 체조 및 순환운동 등을 마치고 사고학생(여)이 50m 달리기를 실시한 이후 기록확인을 위해 기록자에게 걸어오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어 지도교사와 체육교사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에게 연락하여 심폐소생과 인공호흡을 계속하던 중 뒤이어 도착한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동년 11월 3일 사망함.

(사례 2)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마치고 사망

○○여자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여)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일반 체력검사 중 50m 달리기를 마치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

(사례 3) 체육수업중 달리기하다 쓰러져 사망

○○중학교에서 3교시 체육시간에 사고학생(남)이 첫 운동장 수업에서 정열하고 인원파악 후 준비운동을 위해 80m가량을 가볍게 달리다 갑자기 쓰러져 호흡이 멈춰 체육교사와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사례 4) 교사의 체벌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고학생(남)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한 오리엔테이션(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태도안내 및 기본교과 학습방법지도)에 참가하던중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앉았다일어서기 20회 실시 후 50m 거리 운동장을 빨리 달려 돌아오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사례 5) 체육시간 달리기 하다 쓰러져 사망

○○중학교에서 3교시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200m 달리기 수행평가를 대비하여 준비운동을 마치고 조별로 제자리 뛰기 10회를 실시한 다음 1조가 먼저 150m 달리기를 하고 이어서 2조에 포함된 사고학생(여)이 제자리뛰기 4회 를 실시한 다음 150m 달리기를 하던 중 약 50m 정도를 뛰어가다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없고, 얼굴이 창백하며 호흡이 약하여 즉시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 도중 사망.

(사례 6) 체육시간 달리기후 쉬는시간에 쓰러져 사망

○○초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지도교사가 심장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고학생(남)에게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게 쉬도록 하였으나 본인이 스스로 25m 단거리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 점심식 사 후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

(사례 7) 체육수업 중 달리기하다 본인지병으로 사망

ㅇㅇ중학교에서 사고학생(남)은 체육수업시간에 오래달리기 및 건기를 400m정도 하던 중 갑자 기 쓰러져 보건교사 및 담당교사가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후송하였 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 사고와 병명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관상동맥과 대동맥 기시부의 형성부전과 좌하행관상동맥에서 경도 내지 중등도의 동 맥경화에 의한 심장돌연사(흉선임파 특이체질의 가능성도 완전 배제 못함)"라는 사망학생의 신체 적 결함(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사고임.

(사례 8) 학생신체능력검사 중 본인지병으로 사망

ㅇㅇ중학교에서 학생신체능력검사의 6가지 종목 중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오래달리기수업에 참 여한 사고학생(남)이 운동장을 4바퀴(800미터) 달린 후인 15: 00경 급우들과 같이 스탠드에서 휴 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실신하였다. 체육담당교사가 사고학생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이동거 리 3~4m)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 119차량 도착 전까지 기도확보및 심폐소생법을 실시하고 학 생의 체육복을 탈의하여 허리벨트를 풀어주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뒤이어 119차량이 도착하자 학생을 인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진단결과 "심인성쇼크에 의한 급성심장마비" 로 사망한 사고임.

(사례 9) 체력검사 중 신체결함으로 사망

ㅇㅇ중학교에서 2학년에 재학중인 사고학생(남)이 본인의 신체적 결함이 있음에도(지병) 체력검 사 3.000m 오래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운동장에 쓰러져 급히 119에 의거 후송 중 사망한 사고임.

2) 육상 달리기 중 부상사고

(사례 1) 달리기 중 사지마비

ㅇㅇ중학교에서 4. 24. 2교시 체육수업 중 사고학생(남)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보건실로 옮겨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 이후 4. 26 ~ 2004. 4.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4. 29 학부모가 등교하여 담임교사와 면담도중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요 양호학생 등재를 요청하였 다. 그 후 사고학생(남)은 체육수업 중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받으면서 수업 을 받아오던 중 5. 11. 2교시 체육수업 전 체육교사가 몸이 불편한 학생들은 스탠드에 나와서 수 업을 참관토록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운동장을 가볍게 돌도록 지시를 하였다. 몸이 불 편해서 스탠드로 나온 여학생 2명을 상담한 후, 사고학생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 바퀴 반 정도를 돌고 있는 학생을 데리고 스탠드에 데려다 놓고 다른 학생들이 돌고 있는 것을 지 켜보던 중 사고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 즉시 보건교사와 응급조치 후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 로 이송하였으나, "유전적인 비후성 심근증및 허혈성 뇌손상" 등의 본인 지병으로 사지마비가 발 생한 사고임.

(사례 2) 달리기 후 쓰러져 본인질병 발견

○○중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담당교사의 지도아래 운동장에서 체육과목 실기시험에 대비한 단거리 스타트 연습을 하던 중에 지도교사는 안색이 좋지 않은 사고학생을 발견하고 즉시 보건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측 팔·다리에 심한 마비 증세가 나타나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뇌동정맥 기형"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임.

(사례 3) 달리기 후 뇌경색

○○중학교에서 사고학생(남, 1학년 재학 중)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전교생 체력검사에 참여하여 오래달리기(1,200m) 및 걷기 종목을 끝내고 운동장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몸이 마비되는 이상증세를 보여 이를 발견한 지도교사가 급히 119 구급대 및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계속적인 통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 제7급 제4항 노동상실률 60%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고임.

3) 농구경기 중 사망사고

(사례 1) 쉬는시간 농구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

○○고등학교에서 기숙사의 저녁시간 전에 사고학생이 동료들과 함께 농구장에서 슛팅과 드리 블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고임.

(사례 2) 쉬는시간 농구경기 중 사망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총회 진행을 돕기 위해 남아있던 방송반 학생 12명은 학부모 총회가 끝나고 농구공을 가져와 농구경기를 하였다. 후반전 게임 중 사고학생(남)은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 경기를 중단한 후 도서관건물 2층으로 물을 마시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주저 앉으며 쓰러졌다. 동행하던 방송반 학생이 흔들어 깨웠지만 의식이 없어 119로 급히 연락하고 선생님을 불러 반듯이 눕히고 허리를 펴게 하고 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난 뒤, 119 응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중 "심인성 쇼크사"로 동년 3, 30일 사망한 사고임.

(사례 3) 쉬는시간 농구경기 중 사망

○○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남, 3학년)이 5교시 체육시간에 필요한 준비운동을 마치고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동료학생 5명과 체육관에서 농구경기(약 15분)를 하였다. 그러던 중 외부의 아무런 물리적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차량이 학교에 도착하여 학생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동년 4. 11. 16: 40분경 "심장 압전(대동맥박리)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고임.

4) 축구경기 중 사망사고

(사례 1) 축구경기 구경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

○○중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사고학생(남, 1학년)은 아무런 체육활동 없이 운동장에서 친구들의 축구경기를 구경하며 서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를 발견한 체육교사가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임.

5) 축구경기 중 부상사고

(사례 1) 축구경기 중 머리 부상

○○고등학교에서 일과가 끝나고 15시경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사고학생(남)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 신체장해 7급을 받은 사고임.

(사례 2) 축구경기 중 우안실명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시합 중 사고학생(남)이 수비를 보다가 상대 공격수가 슛한 공에 얼굴을 맞아 병원에서 "우안황반부 변성"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였으나 우안실명상태이며 좌안시력은 정상이나 이로 인한 양안시효율 상실율 25%, 전신노동력상실률 24%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3) 축구경기 중 좌안 실명

○○고등학교에서 학교 체육수업 중 축구 조별리그게임을 실시하여 상대선수가 걷어내려고 찬 공이 사고학생(남)의 왼쪽 눈을 맞았으나 사고당시에는 특별한 외상을 보이지 않다가, 7교시에 사고학생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으나, 동년 10. 16일 "시신경손상에 의한 우안실명"의 신체장해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4) 축구경기 중 좌안 부상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축구 평가를 실시하던 중 사고학생(남) 본인이 찬 공이 상대방 다리를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자신의 왼쪽 눈에 맞아 병원 진찰결과 "좌안맥락막 출혈 및 파열"의 진단을 받아 시각장애 8급(노동력상실 50%) 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6) 체육수업 중 사망 사고

(사례 1) 체육수업 중 기왕증에 의한 사망

○○고등학교에서 체육수업시간에 지도교사는 마침 당시 수업이 없던 다른 체육교사에게 수업을 부탁하고 자신은 체육관에서 30m 떨어져 있는 트레이닝실에서 수업에 필요한 탁구대를 옮기고 있었다. 위임을 받은 다른 체육교사는 전체학생들에게 간단한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자율적으

로 농구, 축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는 자신은 교무실로 이동하였다.

사고학생(남)은 친구들과 미니축구를 하다가 평소답지 않게 뛰다가 쉬기를 반복하더니 결국은 농구대 옆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친구들이 사고학생을 살펴보니 얼굴이 파랗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시 30m 거리에 있던 지도교사에게 급히 연락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한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응급처치를 취하던 중 119차량이 도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8: 10분경 사망하여 다음날 부검한 결과 기왕증 (확장성심근염)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진 사고임.

(사례 2) 체육수업 중 심장마비 사망

○○초등학교에서 6교시 체육시간이 끝나 갈 즈음 사고학생(여)이 공 이어주기를 하기 위해 대형을 벌려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즉시 보건교사가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으나 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여 입원치료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임.

7) 체육수업 중 부상사고

(사례 1) 철봉에서 떨어져 사지마비 부상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사고학생(남)이 철봉대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 손을 놓치면서 지면에 얼굴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떨어진 후 움직이지 못하여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타고 고대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은 결과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응급수술후 치료를 받았으나 동년 12. 5일 "상지 불완전 마비및 하지 완전마비"의 진단을 받아 신체장해100%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철봉에서 떨어져 경추 부상

○○고등학교에서 오전 7시경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조부 남학생 9명이 3학년 학생의 지도로 아침 자율훈련을 하는 도중 사고학생(남)이 철봉대에서 두바퀴 공중 돌기를 하다가 몸이 뒤쪽으로 치우치면서 한바퀴 반만 돌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뒷목 골절의 부상을 입어 하지마비로 신체장해 100%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8) 체육선수의 훈련중 부상

(사례 1) 럭비훈련중 사망 사고

○○중학교의 럭비부 선수인 사고학생(남)이 강화도 주문도리 해변에서 실시한 전지훈련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인근의 트럭에 실어 민박집으로 급히 후송하면서 지도교사 두명이 교대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근처 보건소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였으나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되어 119 헬기를 지원 요청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임.

(사례 2) 체조선수의 훈련중 경추부상

○○고등학교의 체조선수인 사고학생(남)이 인근 ○○중학교 체조장에서 마루운동 공중 2회전 돌기 연습을 하다가 공중 2회전 때 몸의 감각을 잃어 몸이 펴지면서 머리부터 매트위로 떨어져 목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사고 즉시 본인으로 부터 팔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119 구급대에 후송 요청을 하였고, 119 구급차가 도착하여 사고장소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하고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신경성 방광으로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으로 2007. 12. 24일 장애진단(국가배상법시행령 신체장애등급 1급, 노동력상실률 100%)을 받은 사고임.

(사례 3) 레슬링 연습 중 경추골절 부상

O O 중학교의 레슬링선수인 사고학생(남)이 레슬링 훈련장에서 지도교사의 감독 및 지시에 따라 레슬링 연습훈련 중 상대선수와 프리모션(1:1 기술자유연습)을 하다가 상대선수에게 목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태클을 들어가려다 상대선수의 몸무게에 목을 눌려 부상을 입었다.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 3, 4 골절및 탈구, 불완전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이 마비"의 신체장해를 입은 사고임.

(사례 4) 유도연습 중 머리 부상

○○중학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관내 유도부 선수에 대한 합동훈련으로 1:1 기술훈련을 하던 중 사고학생(남)이 상대선수의 발기술에 의해 넘어지면서 상대선수의 체중에 의해 우측 두부가 눌리면서 "급성 경막하 출혈및 상성 대뇌부종"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5) 농구연습 중 다리 부상

ㅇㅇ중학교에서 오후 5시 30분경 동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부 오후 운동 중 사고학생(남)이 개인 속공 드리블로 레이업 슛을 하다 수비선수와의 마찰과 착지시의 충격으로 "우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9) 기 타

(사례 1) 체육수업전 치아부상사고

ㅇㅇ중학교에서 4교시 체육수업 준비담당으로 지정된 사고학생(남)이 수업준비를 위해 운동기 구들을 운반하던 중 돌아서서 스윙연습을 하던 다른 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구강부위를 맞아 치아 6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물구나무서기 중 부상사고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물구나무서기 실기평가를 하던 중, 사고학생(여)이 물구나무를 선채 몸의 균형을 잃고 매트위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며 통증을 호소하였다.

담당체육교사가 응급조치를 한후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 같아 진료를 받지 않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다음 날새벽부터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동년 4. 27일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뇌진탕, 압박골절(흉추 4, 5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시신경및 시각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후 신체장해등급 9급(국가배상법시행령상 노동력상실률 40%)의 판정을 받은 사고임.

(사례 3) 팔굽혀펴기 중 식물인간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사고학생(남)이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10회 정도하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즉시 체육교사가 기도유지 및 전신 마사지를 2분정도 실시하고 보건교사가 학생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찰결과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음.

(사례 4) 수학여행 산행 중 사망사고

○○여자고등학교에서 제주도 수학여행 일정으로 한라산 산행에 앞서 학생들의 산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반별로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총 36명을 제외한 후 한라산 어리목(해발 1200 m) 광장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16: 00경 윗 세오름(해발 1700 m)에 도착하였다.

사고학생(여)은 친구들과 기념촬영 후 16: 30경 하산하기 시작하여 약 30분 후인 17: 04경 길 가 우측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동행하던 교사 2명이 발견하여 괜찮냐고 물어보며 학생의 의식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반응이 없이 무 호흡상태로 확인되어 구조 호흡을 위해 평지에 눕히고 기도유지 자세를 취하며 119에 신고하였다. 곧 이어 119 헬기가 도착하여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심폐소생술을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하였으며, 인근 한라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실험실습시간

(사례 1) 과학시간 준비 중 실명사고

○○여자중학교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과학시간 실험 준비물인 드라이아이스가 든 보온 통을 과학실에서 교실로 들고 온 학생들이 호기심에 억지로 보온병을 열다 보온통 마개가 압력으로 튀어 오르면서 옆에서 구경하던 사고학생(여)의 눈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한 사고임.

(사례 2) 화산폭발 실험중 화상사고

○○초등학교에서 지도교사는 1교시 과학시간에 화산폭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2교시 음악 시간에 담당교사가 결근한 관계로 화산폭발실험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 운동장과 연결되어 있는 느티나무공원 놀이터 모래장에서 실험공간을 확보하고 실험을 하던 중 화산폭발을 위한 발화점까지 예열하기 위하여 PET 병에 든 알코올을 0.4리터 가량 붓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실험을 지켜보던 4명의 학생들이 화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3) 과학실험중 화상사고

○○중학교에서 과학시간에 과학담당교사의 지도로(시범실습) 염화나트륨 등 4가지 시료의 불꽃반응 실험을 관찰하였다. 염화나트륨이 들어 있던 증발접시의 불꽃이 꺼졌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담당교사가 증발접시에 추가로 메탄올을 붓는 과정에서 살아있던 불이 메탄올 용기로 옮겨 붙어 실험을 관찰하던 사고학생에게 화염이 분사되어 3도화상(신체표면의 28%)을 입은 사고임.

(사례 4) 자동차 실습 중 안구파열 부상

○○고등학교에서 실습실에서 자동차 건설기계수업중 자동차를 분해하는 과정에 사고학생(남)이 차동피니언 축 끝에 달려있는 베어링을 탈거하고자 스프링(리테이너)을 타격하던 중 스프링이 튀어나오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때려 안구가 파열 된 사고임.

(사례 5) 점심시간 실습 중 사망

○○고등학교에서 2007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대비한 동계기능훈련기간 중 점심시간이었다. 학교내 냉동기술 기능훈련실에서 오후 과제인 전기배선 작업을 연습중이던 사고학생(남)이 질소가압 시험을 지도교사 없이 임의로 실시하다가 과다한 압력 상승으로 압축기가압력에 의해 터지면서 그 파편이 사고학생(남)의 가슴을 치면서 쓰러졌다. 사고 직후 지도교사는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한편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인근 가야기독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심폐소생술을 약 25분 정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고임.

(사례 6) 실습 중 교사의 과실로 구상금 청구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실습시간에 "물질의 연소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석회수의 반응을 하는 실험" 중 지도교사가 촛불이 세워진 비이커에 알코올을 석회수로 오인하여 붓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뿜어지면서 반대편 쪽에 앉아있던 사고학생(남)의 얼굴과 상체 일부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사고발생 후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지도교사와의 대화는 물론 각종 보상합의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지도교사를 형사 고소하여 법원의 제1심 판결 결과('07. 11. 28.) 지도교사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도교사는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학생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또한 사고학생의 학부모는 교육감과학교장, 해당교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 청구액 5억2천만원, 노동력상실율 70%, 민사소송제기일자 '07. 9. 25.)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교육감은 2억3천여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08. 11. 6.)을 받았다. 그후 피고와 원고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교육감은 법원판결금을 원고인 사고학생의 학부모에게 지급한 후동 금액에 대하여 지도교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0여 만원을 구상조치하였다.

(사례 7) 실습 뒤 정리 중 화상

OO초등학교에서 과학시간에 알코올램프로 물을 가열하여 대류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을 마치고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뒷 정리를 하던 사고학생이 삼발이를 실수로 건드려 비커에 담긴 끓는 물이 자신에게 엎질러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8) 실습 중 손가락 절단 부상

○○고등학교에서 실습시간에 사고학생(여)이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 발효된 콩을 믹서기로 파쇄하여 준비된 용기에 담기 위해 믹서기 벽에 붙어있는 콩을 손으로 쓸어내고 있었다. 한편 같은 조에서 실습을 하던 동료가 믹서기 스위치를 성급하게 작동시키는 순간 사고학생의 장갑을 낀 우측 손이 믹서기 칼날에 말려 들어가면서 우측 중지, 약지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체장해(노동력상실율 13%)의 판정을 받은 사고임.

(사례 9) 쉬는시간 기계톱에 손가락 절단 부상

○○고등학교에서 쉬는시간에 지도교사는 제품실습실에서 기계톱으로 목재를 자르고 있었다. 한편 사고학생(남, 3학년)은 같은 반 친구와 함께 지도교사를 도와주기 위해 기계톱을 다루다 실수로 왼쪽 검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신체장해(국가배상법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1급 7항)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10) 과학실험실 청소 중 사망

O O 중학교에서 청소시간에 사고학생(남)은 과학준비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당시 과학보조 교사는 사고학생이 점화기를 만지는 것을 보고 만지지 말라는 주의와 함께 다른 학생에게는 개수대에서 실험도구를 씻으라고 지시한 후, 다른 장소로 청소감독을 하러 가고 없었다. 한편 사고학생은 점화기를 가지고 불을 켜는 장난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에탄올통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하여 전신화상 90%의 부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인 하나병원에 입원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증, 심폐부전패혈증, 다장기부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고임.

수학여행 관련 사고

(사례 1) 무대 폭죽이 넘어지면서 부상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지인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내 숙소에서 장기자랑대회 및 캠프파이어 도중 무대에 세워 둔 폭죽이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사고학생(남)의 눈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수학여행 숙소 베란다를 통해 옆방에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

- ▶ ○○고등학교에서 강원도 설악산 일대 수학여행 중 숙소에 투숙하고 있던 사고학생(남)이 같은 방에 묵고 있던 동료급우와 베개를 가지고 장난을 친 후 00: 45경 친구들이 많이 있는 옆방으로 건너가기 위해 건물 외각 베란다 쪽 발코니 사이의 칸막이를 잡고 옆방으로 넘어가던 중 발코니 사이의 칸막이가 빠지면서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인근 속초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한 사고임.
- ▶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지인 설악산 숙소 4층에 위치한 502호실을 배정받아 투숙하던 사고학생(남)이 동 호텔 503호실에 투숙하던 친구가호텔 건물 외벽의 베란다를 이용하여 502호실로 들어와 자고 있던 사고학생을 깨운 후 소리를 지르고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사고학생에게 503호실에 있는 다른학생을 지정하며 데려오라고 하자 친구의 강압에 못이겨 베란다를 통해 옆 방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사망한 사고임.(사고당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호텔 복도에는 인솔교사가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베란다를 통해 옆방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

야외활동 중 사고

(사례 1) 체험학습 해산 중 자전거 타다 사망

○○중학교에서 추계체험학습을 위해 동 학교 교직원 11명과 전교생 100명은 학교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산(1,046m)을 등반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09: 30분 산 아래 주차장에 집결하여 3시간 정도에 걸쳐 등반을 마쳤다. 14: 05분경 집결장소에서 바로 해산을 지시하고 학생들을 귀가 시킨 뒤 지도교사들과 3학년 학생들은 남아 주차장 주변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사고학생(남)이 1인승 자전거를 친구와 함께 타고 산길을 내려가다가 경사가 심한 지점(해산지점으로 부터 500m 정도)에서 중심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사고학생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뒤따라 내려오던 학생들에게 발견되어 119에 구조대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두 학생모두 사망한 사고임

(사례 2) 체험학습 중 버스안에서 넘어져 실명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관광버스를 타고 귀교하던 중 학교에 도착하기 10분전에 사고학생(여)은 멀미가 나려하자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자신의 도시락 가방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에 놓아둔 친구의 우산이 자신의 가방 끈에 걸려 떨어지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두리번거리던 중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면서 우산 끝에 자신의 안경이 깨지면서 안경파편이 자신의 왼쪽 눈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즉시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 등을 받았으나 동년 12월 11일 우안실명의 신체장해를 입었다.

축제활동 중 사고

(사례 1) 축제행사 불꽃놀이 중 폭발로 화상

O O 고등학교에서 학교축제 중 과학반의 전시발표에서 화학쇼팀에 소속되어 있던 사고학생(남)은 에탄올에 불꽃반응을 하는 염을 섞어 여러 가지 색 불꽃을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사고학생이 알코올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조에 부을 때 불꽃이 남아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자신의 상의에 옮겨 붙게 되어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이미 화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축제행사 작품 작업중 화상

○○고등학교에서 학교내 작업실에서 사고학생(남)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학교축제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던 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학생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때마침 신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사고학생의 좌측 손에 불이 붙어 3도 화상을 입은 사고임.

등 · 하교 중 사고

(사례 1) 하교 중 친구집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중 책가방을 학교에 둔 채로 학교 인근 친구아파트에 가서 놀다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는 학생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사례 2) 자전거로 등·하교중 사망

○○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남)이 자전거로 하교하던 중 다른 곳을 보다가 본인의 실수로 자전 거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위 학생은 등·하교 시 2회의 버스를 타야 하므로 1회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1회는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임.)

(사례 3) 자전거로 하교하다 부상

○○초등학교에서 사고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하교를 하던 중 갑자기 돌풍이 불어 모자가 날아가 면서 타고 가던 자전거의 중심이 흔들려 길 옆 돌담에 부딪쳐 코뼈가 골절된 사고.

놀이관련 사고

(사례 1) 휴식시간 중 우안 부상

ㅇㅇ중학교에서 사고학생(남)이 휴식시간에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반 학생이 미술시간에 사용하고 남은 딱딱하게 굳어진 찰흙덩어리를 무심코 던져 사고학생의 눈에 맞음. 토 요일 병원 진료시간이 경과하여 월요일 병원에서 진료결과 우안 수정체가 상해 수술이 필요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통보를 받아. 길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수정체 손상의 진단을 받고 인공수 정체 삽입 수술치료를 받음.

(사례 2) 표창던지기 중 좌안 실명

ㅇㅇ중학교에서 아침 보충수업이 끝나고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09: 05분경에 사고학생 (남)이 당시 유행하던 표창던지기를 하기위해 연필 깍는 캇터 칼로 표창을 만들어 교실 뒷면의 나 무판에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사고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자기표창을 주워 일어서는 순간에 다른 동료학생도 표창을 던지다가 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학생의 왼쪽 눈에 명중되어 실명.

(사례 3) 부메랑으로 장난하다 실명

ㅇㅇ초등학교에서 사고학생(초등학교 3학년 재학중)은 2교시 수업을 위하여 음악실로 이동하여 음악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던 중 같은 반 친구가 던진 부메랑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

(사례 4) 장난하다 좌안 시각장해

ㅇㅇ중학교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수업으로 농구(남학생). 배드민턴(여학생)을 하던 중 사고 학생(남)과 동료학생등이 서로 실내화 던지기 장난을 하다 동료학생이 던진 실내화에 사고학생의 왼쪽(안경)눈을 맞아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좌안 시각장해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5) 장난하다 넘어져 "선천성혈관기형"의 발견

ㅇㅇ초등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교실에서 사고학생(여)외 5명의 학생이 포테이토 칩. 3 · 6 · 9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사고학생이 본인도 게임에 참가시켜 달라고 하자 동료학생이 인원 이 차서 참가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잘못들은 사고학생이 동료학생의 어깨를 쳤고 동료학생 은 화가 나 사고학생의 다리를 걷어찼으며, 다리를 맞은 사고학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후송요청을 하여 인근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하고 CT 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을 받아 다시 길병원으로 이송하여 각종 검사결과 "뇌동맥정맥기형(선천성혈관 기형)" 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고임.

(사례 6) 쉬는시간 기절놀이 하다 부상

ㅇㅇ중학교에서 음악시간에 담당교사가 6명씩 음악실에 불러놓고 단소연주 수행평가를 보던 중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고학생(남)이 호기심에 혼자 기절놀이라는 장난을 하다 복도바닥에 넘 어져 이가 부러지고 안면부상 및 급성스트레스성 장애 증상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급식관련 사고

(사례 1) 급식카트에 의한 사고

○○초등학교에서 사고학생(여)이 같은 반 친구 1명과 함께 급식카트를 끌고 4층에 점심급식을 가지러가서 음식을 가득 싣고 오던 중 뒤 쪽에서 다른 반 카트가 근접해서 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비켜주려고 카트의 속도를 줄였는데 뒤따라오던 급식카트가 음식의 무게로 인해 미처 멈추지 못하여 사고학생이 끄는 카트와 충돌함. 그 충격으로 사고학생의 왼쪽 검지 첫 마디의 1/4과 손톱 3/4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급식카트에 치아 사고

○○초등학교에서 사고학생(여)이 점심시간에 급식차를 운반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급식차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쳐 앞니 5개가 뿌리채 뽑히는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3) 교사가 끊인 주전자 물에 화상사고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담임교사 지도하에 아침자습시간 중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담임교 사가 책상과 창문사이에 놓은 간이 급수대에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여 놓았다. 담임교사는 1교시 학습자료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는 사이 사고학생이 교실에서 급우와 뛰어 다니 며 장난하다 넘어지면서 급수대를 건드려 전기주전자의 물이 쏟아져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종아 리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이후 학부모는 지도교사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지도교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사례 4) 장난에 의한 우발적 사고는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초등학교에서 점심배식시간에 차분한 급식배식을 위해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학생이 학교교실 책상 위에 엎드려 있었다. 이때 앞 좌석에 앉아있던 학생(A)이 옆 좌석 학생(B)에게 장난을 걸자 화가 난 옆 좌석 학생이 수저통을 던져 젓가락이 튀어나오면서 이러한 소란에 무슨일인가 하고 고개를 들던 사고학생(여)의 눈을 찔러 "좌안 각막파열 및 망막박리"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이후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좌안 실명으로 노동력상실율 30%의 신체장해 판정을 받고 피해학생 학부모는 부산시교육감과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판결에서 "본 건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서 학교측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없음과 가해학생의 불법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급식통을 운반하다 넘어져 요추 부상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사고학생이급식실에서 배식을 받아 동료와 함께 학급으로 배식통을 운반하던 중에 2층 계단에서 발을 헛딛이는 순간 넘어져 요추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장해판정(노동력상실율 20%)을 받은 사고임.

(사례 6) 배식중 급식통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상

○○유치원에서 유치원 간식시간에 지도교사가 간식을 먹기 위하여 유아들을 모아놓고 간식을 나누어 주던 중에 사고원아(남)가 배식받은 오뎅 국물을 들고 가다가 배식통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양 팔꿈치. 양다리 및 엉덩이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추락 사고

(사례 1) 옥외화장실 위에 올라가 놀다 추락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글짓기)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사고학생(여)이 학교 교사 옆 옥외화장실 지붕 위에 올라가 친구들과 놀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떨어져 부상.

(사례 2) 학교뒤 담 옹벽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다 사망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사고학생이 친구들과 학교 뒤 담쪽 옹벽(4m정도 높이)에서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놀이를 하였다. 지난 체육시간에 사용하다 정리하지 않은 매트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로 뛰어내리던 놀이를 하던 중 사고학생(남)이 공중돌기를 시도하면서 매트위로 뛰어내렸는데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머리 쪽이 바닥에 부딪혔다. 의식을 잃은 채 다량의 출혈이 생겨 119 응급차로 인근 강남고려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사례 3) 유치원생이 쇼파에서 떨어져 경추 골절

○○유치원에서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사고학생(여)이 어린이용 쇼파에서 거꾸로 누워 혼자 놀이를 하던 중 굴러 떨어지면서 경추골절의 부상을 입고 하지마비로 신체장해 100%의 진단을 받은 사고임.

(사례 4) 2층 화장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OO고등학교에서 쉬는시간에 2층 화장실 외벽 창문베란다에서 사고학생(남)이 동료들과 놀면서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서 놀고 있었다. 사고학생은 영웅심에서 화장실 창문에서 난간 쪽으로 뛰어 내렸으나 창문에 몸이 끼여 균형을 잃고 난간에 부딪힌 후 아래쪽으로 추락하여 "우측 원위대퇴골 골절, 좌측 원위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2,3,4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5) 청소 중 4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부상

OO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환경미화 대청소 를 하던 중 4층 교실 바깥 창틀 난간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기 위해 사고학생(남)이 교실 창문을 넘어가다 발을 잘 못 디뎌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단결과 "비장파열 및 요추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6) 실내화 주우려다 우천지붕으로 떨어져 사망

○○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은 1층 바깥 화단에서 2층에 위치한 자신의 교실안으로 실내화를 던지면 다시 주워오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의 실내화가 우천지붕 위로 날아가떨어지자 2층 베란다에서 우천지붕(캐노피)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천지붕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바닥에세게 부딪혀 사망함.

(사례 7) 2층 난간을 타고 옆 교실로 들어가려다 추락

○○초등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4명의 여학생들이 교내 2층 다목적실에 있는 방송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던 사고학생(여)은 밖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열어 주지 아니하자 2층 창문 밖 난간을 통해 방송실과 연결된 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1층 잔디밭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8) 2층 베란다에서 청소하다 떨어져 사지마비 부상

○○중학교에서 6교시 수업이 끝나고 다음날에 있을 학교평가 및 학교행사 관계로 전교생이 담당구역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도교사는 2층 베란다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학생들에게 베란다 청소를 할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사고학생(여)외 4명의 학생이 지원하였다. 지도교사는 2층 베란다 청소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의사항으로 "베란다에 내려 갈 때에는 엉덩이가 밖으로 나가게 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가야 한다"라는 지시를 하고 6m 전방에 있는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다. 그 사이 사고학생은 담임교사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책상을 밟고 유리창 틀에 올라가 베란다 방향으로 내려서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사지마비의 부상을 입고 노동력상실율 100%의 신체장해 판정을 받은 사고임.

(사례 9) 2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 추락

○○중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사고학생(여)이 2층 교실에서 운동장 쪽 창문에 혼자 걸터앉아 운동장을 바라보다 일어나면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1번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10) 2층 창문 청소하던 중 추락

○○중학교에서 3교시 봉사활동(청소)시간에 사고학생(여)이 2층 교실의 유리창 청소를 하기 위해 창문틀에 올라서던 중 실수로 발로 헛디뎌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다리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11) 장애학생이 2층 창문에서 추락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고학생이 담임교사의 지시로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대회 참가를 위해 2층 교실에서 수직공예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연습을 다 마치고 담임이 확인을 오기를 기다리다 뒤늦게 교실 문이 바깥에서 잠긴 걸 발견하고는 운동장쪽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려다가 2층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12) 3층 교실 청소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부상

ㅇㅇ여자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 임장지도하에 학교행사 준비를 위한 청소를 실시하게 되었다.

3층 교실내 청소를 모두 마치고 창문을 닦기전에 담임교사는 창문은 안에서 손이 닿는 곳만 닦고 절대 창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사고학생(여)이 교실 창 밖에 나가보고 싶어 분리수거통(플라스틱)을 발로 밟고 창문을 넘어가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2층 난간으로 1차 떨어진 다음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학생들이 추락사실을 알려 담임교사가 추락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결과 외상은 심하지 않고 학생도 의식이 있어 잠시 후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치료하였으나 "외부 척추 충격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장해를 입음.

(사례 13) 3층 교실에서 뛰어내리다 다리 골절의 부상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지도교사는 3층에 있는 3개반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교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고학생(남)이 뺑소니 치기위해 교실 운동장쪽 창문을 통해 자신의 책가방을 1층 급식실 옥상에 던져놓고 3층 교실 창문에서 급식실 옥상으로 뛰어내리다 "좌우측 뒤 발꿈치 분쇄골절"의 중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14) 4층에서 계단 난간을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 추락 사망

○○초등학교에서 2006. 5. 1. 전교생 합동체육을 위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모이던 중 사고학생이 빨리 나가려고 4층과 3층 계단 난간을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3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임.

(사례 15) 2층에서 계단 난간을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 추락

○○초등학교에서 쉬는시간에 사고학생(남)이 친구들과 어울려 2층 계단에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 추진력이 과하여 난간에서 멈추지 못하고 4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16) 학교 계단 난간에서 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비만인 사고학생이 4층 계단난간 안전봉에 배를 대고 허리를 숙인 채 운동을 하다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3층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사례 17) 좀비놀이하다 3층에서 추락

OO초등학교에서 쉬는시간에 사고자는 자기 옆 교실에 위치한 3층 시청각실에서 암막커튼을 치고 친구들과 좀비놀이를 하고 있었다. 친구가 좀비가 되어 암막커튼 뒤에 숨어있는 자신을 찾으려 하자 창문이 열려있는 줄도 모르고 몸을 뒤쪽으로 기울이다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골절을 입은 사고임.

익사(수영장 관련 사고)

(사례 1) 중국문화체험활동 중 수영하다 익사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보고와 중국문화체험캠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06. 8. 4 중국 산동성 위해시로 출발하였다. 체험캠프 3일차인 2006. 8. 6. 16: 00경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산둥성 위해시 위해국제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 사고학생(여)이 물에 빠져 실종되었다. 학교장은 즉시 구조대원과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하고 인근 중국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등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한 결과 사고학생을 인양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중국인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달려와 한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 하였으나 끝내 사망한 사고임.

(사례 2) 졸업여행 중 수영하다 익사

OO고등학교에서 제주도 졸업여행 2일째 마지막 방문지인 중문해수욕장에 도착하여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날이 더워 학생들이 땀을 많이 흘려 수영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지도교사는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수영을 원하는 학생들만 수영을 실시하였다. 약 10분 후 사고학생(남)이 안 보인다고 하여 인근 해경과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수색을 시작하였는데 약 40분 후 사고학생(남)을 인양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고임.

(사례 3) 수학여행 중 자유시간에 수영하다 익사

○○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학여행일정에 따라 설악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에 사고학생이 친구들과 바닷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물이 깊어진 곳에서 발을 헛디뎌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다 파도에 밀려 깊은 곳으로 밀려 내려가 익사한 사고임.

(사례 4) 축구부선수의 야외훈련 중 수영하다 익사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선수 23명 전원과 감독, 코치 및 학부모(15명 정도)는 경남 합천군 야로면으로 야외훈련차 학교 축구부 전용버스로 출발하였다. 당일 11: 00경 도착한 다음 오전에 체력훈련을 마치고 점심식사후 자유시간에 강 상류 150 m 지점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축구선수들 중 한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한 사고학생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학생을 구조한후 사고학생은 심장마비로 익사한 사고임.

(사례 5) 하계훈련 중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익사

OO고등학교에서 전국체육대회 남자 고등부축구 광주광역시 대표팀으로 결정된 동 학교 축구 선수들이 전력향상을 위한 하계훈련을 목적으로 전국 고등학교 축구 추계연맹전에 출전하였다. 예선 2차전을 마치고 숙소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식시간에 숙소에서 1 km 전방의 저수지로 놀러 간 선수들 중 사고학생과 동료학생 1명이 수영을 즐기다가 갑자기 사고학생이 물속에서 허우적대자 이를 지켜보던 3학년 학생이 구조를 위해 물에 뛰어들었으나 구조에 실패하였다. 사고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병원에 도착하였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임.

(사례 6) 배구선수들이 훈련 중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익사

○○고등학교에서 배구부원들이 전지훈련 차 강원도 인제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다. 오전 훈련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사고학생이 내린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임.

(사례 7) 하계훈련 중 강가에서 수영하다 익사

O O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학생 28명이 체력보강과 심신단련을 위한 극기훈련을 위해 인근 강으로 출발하였다. 첫날 훈련을 실시하고 점심을 먹고나서 쉬는시간에 유도코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강에 들어갈 때에는 무릎 위까지 오는 깊은 곳은 가지 말고, 특히 다리 밑은 수심이 깊으니까 가지 말 것과 또한 혼자서 행동하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행동 할 것" 등 강에서 놀 때의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

주의사항을 듣고 사고학생 외 6명은 처음 수심이 얕은 강으로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다리 밑으로 이동하여 30분 정도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사고학생이 보이지 않았다. 즉시 인근 119구조대가 도착하여 잠수부를 투입하여 수색한 결과 다리 밑에서 익사한 사고학생을 발견한 사고임.

(사례 8) 춘계학습 중 강가에서 놀다 익사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전원이 춘계학습을 위해 경남 하동송림공원 유원지(섬진강)에 도착하여 생태탐사를 하고, 점심식사후 남녀별 반대항 닭싸움 등의 단체놀이를 가졌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청소활동 후 인원점검을 실시하던 중 사고학생(남)이 보이지를 않아 교사 및 학생들이당일 15:50까지 주변일대에서 실종된 학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일단 귀가시키고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 등을 하고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사고당일은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발생 후 8일이 지난 5월 9일 강 하류에서 익사체로 발견 된 사고임.

(사례 9) 농촌체험학습 중 하천에서 물놀이 하다 익사

○○초등학교에서「여름두레학교 운영계획」의거 재학생 88명과 인솔교사 7명과 함께 함양군 소재 체험학습장에서 물놀이 도중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함.

(사례 10)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경추 부상

ㅇㅇ고등학교에서 수영특기적성시간에 학교 인근 실내수영장에서 사고학생이 지도교사의 눈을 피해 친구들에게 자신의 다이빙 솜씨를 과시하기 위해 수심 1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다 경추부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의 신체장해가 발생한 사고임.

(사례 11) 수학여행 중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경추부상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강원도 속초시 한화워터피아에 단체입장하여 각 시설물을 취향에 따라 관람및 이용하는 시간에 옥외 수영장에서 사고학생(남)이 급우 7명과 함께 수영을 하고 놀던 중 물 밖으로 나와 다이빙을 하다가 풀장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5번 추체골절, 경추척 수손상 사지부전마비"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차도가 없고 노동력상실률 73%의 신체장애판정을 받은 사고임.

(사례 12) 조정선수의 훈련 중 익사

OO고등학교에서 진주 남강조정훈련장에서 조정코치외 3명의 선수들이 간단한 조깅과 준비운동을 마치고 조정훈련을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 조정코치는 10: 30분경 사고학생(여)을 먼저 경기정에 태워서 100m 전방에 있는 훈련장소로 출발시키고 이어서 다른 한명의 선수를 출발시켰으며 나머지 한명의 선수는 육상에서 체력훈련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자신은 두 명의 조정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모터보트를 타고 시동을 걸고 있던 중 뒤에 출발한 학생으로 부터 사고학생(여)의 경기정이 전복되었다는 무전연락이 와서 사고 장소로 급히 출발하였다.

사고주변에 도착한 조정코치는 인근을 수색하였으나 사고학생은 보이지 않고 경기정만 남아있어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근처를 계속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다음날 12:56분경 강 바닥에 가라 앉아 있는 사고학생의 시신을 발견한 사고임.

(사례 13) 선박 항해실습 중 배에서 추락하여 익사

○○고등학교에서 학교 정규실습교육과정인 선박 승선실습기간에 사고학생이 실습항해사 자격으로 금강선박소속인 이스턴챌린저호(총 톤수 4,000톤 동남아 및 한중 입항로 잡화선)에 승선하여실습을 하게 되었다. 이스턴 챌린저호가 태국 방콕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새벽 02시에서 06시 사이에 사고학생이 실종되어 수색한 결과 부두 부근의 강(바다와 연이은 곳)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후 방콕에서 유족, 방콕주재 영사및 한국및 태국 경찰의 입회하에 사체부검을실시한 결과 선상에서 실족하여 추락, 익사(직접사인 – 심폐정지)한 것으로 판명된 사고임.

돌연사

(사례 1) 교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고등학교에서 교실로 향하던 중 본관 2층 복도에서 사고학생(남)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나타나 보건교사와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및 후송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였지만 오전 09: 40분에 사망함.

(사례 2)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혈관기형"의 진단

○○초등학교에서 휴식시간 사고학생(6학년 재학 중)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던중 갑자기 구토와 함께 두통을 호소하여 보건실로 이동하던 중 고열과 함께 쓰러져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진찰결과 "뇌혈관기형"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임.

(사례 3) 교실에서 이동 중 쓰러져 사망

○○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여)이 휴식시간에 기술실(이동수업)로 이동하던 중 심장쇼크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고임.

체벌 등 교사와 관련된 사고

(사례 1) 생활지도 체벌을 한 후 뇌종양 발견

○○여자고등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용의복장지도를 하던 중 3차례 이상 지적된 학생들을 교무실 생활지도부로 불러 엉덩이를 한 대씩 체벌하고 그 중 파마를 심하게 한 사고학생(여)의 머리를 지시막대로 두 세 차례 가볍게 지적을 한 후 교실로 돌려 보냈는데 2교시 후 사고학생(여)이 머리가 아프다며 양호실에 갔다가 조퇴를 하고 귀가하였다. 다음날 사고학생이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여 익일 일요일 새벽 2시경 인근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머리에 종양을 발견하고 방사선 치료인 감마나이프 시술을 하였다.

(사례 2) 교사와 야구게임 중 배트에 맞아 실명

○○중학교에서 교내 태권도실에서 교사와 학생들간 보조운동으로 간이 야구게임을 실시 하던 중 감독교사가 타석에서 휘두른 배트(짧은 대나무)가 손에서 빠져 날아가 사고학생(남)의 눈에 맞으면서 우측 눈이 완전 실명한 사고임.

(사례 3) 교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맞아 두개골 골절 부상

○○중학교에서 체육수업시간에 지도교사가 소프트볼 야구타구 시범을 보이고 있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사고학생이 다른 학생이 굴려주는 야구공을 주우려고 앞으로 나아가다 교사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이마를 맞아 두개골 함몰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4) 교사가 휘두른 단소에 맞아 우안실명

○○여자중학교에서 5교시 수업 시작 직후 교실에서 수업준비를 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놀이용 카드를 펼쳐놓고 월드컵 축구선수의 사진과 기사를 붙여 놓은 어떤 학생에게 지도교사가 주의를 주었다. 위 학생이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자 지도교사는 이를 나무라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가지고 있던 단소로 교탁을 내리쳤는데, 그 반동으로 단소가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날아가 교탁정면에서 약 2m정도 떨어져 앉아 있던 사고학생의 눈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고임.

기타 특이 사고

(사례 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귀교 중 충남대천휴게소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휴게소에 과속으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앉아서 쉬고 있던 학생 2명을 치어 두 학생이 사망한 사고임.

(사례 2) 가을소풍 중 뱀을 잡으려다 물려 부상

○○초등학교에서 금산사 계곡으로 가을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고 휴식시간에 사고학생이 친구들과 뱀을 발견하고 잡으려다 뱀에 손가락을 물려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3) 등굣길에 잡아온 도마뱀에 물려 부상

O O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고자는 등굣길에 도마뱀을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서 학교에서 왔다. 쉬는시간에 도마뱀을 꺼내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다 도마뱀에 손가락을 물려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4) 현장체험학습 중 곰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지도교사 인솔하에 학교 인근의 휴양림을 방문하여 반달곰을 구경하던 중 사고학생이 혼자 자리를 이탈하여 곰 우리에 손을 넣다가 반달곰에 손을 물려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임.

(사례 5) 합숙중이던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

○○초등학교에서 전국소년체전 대비를 위한 동계합동훈련계획에 의거 남자 7명, 여자 7명, 계 14명의 체조부 학생을 선발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숙훈련중에 사고당일 합숙소 내 학생 14명이 23:15부터 취침을 하였고 감독교사는 취침을 확인하고 외부로 출타하였다. 익일 오전 01:50경 동 학교 체육관내 무대 쪽(합숙실 맞은편)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화성이 강한 마루바닥 및 체조용구 등에 옮겨 붙으면서 취침중이던 선수 중 수명의 학생이 화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6) 넘어지면서 커트 칼에 부상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경 사고학생(남)이 아침활동 후 1교시 수업준비를 위해 급우들과 함께 교실 뒤편의 휴지통에서 연필을 깎고 있었다. 그러자 2~3명의 동료급우가 화장실로 급히 가다가 사고학생과 부닷히면서 사고학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휴지통에 부닷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커트 칼에 자신의 머리를 찢기는 부상을 입은 사고임.

시설 · 물품 관련 사고

(사례 1) 수련원 사다리 오르다 줄이 끊어져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인근수련원에 입소하여 수련원의 훈련계획에 따라 수련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왕봉 오르기'라는 높이 8m의 모형시설물의 쇠줄 사다리를 타고 오르고 있었다. 위 줄타기 코스는 1명씩 올라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학생 5명이 올라가자 사다리를 지탱하고 있던 연결핀이 끊어지면서 사고학생이 땅으로 추락하여 흉추, 요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강당지붕에 올라간 모형항공기 내리다 넘어지면서 사망

ㅇㅇ초등학교에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날리기 대회 참가희망자 10여명이 지도교사의 감 독아래 15: 00경 부터 운동장에서 고무동력기 연습을 하고 15: 50분에 종료하였다. 지도교사는 학생 모두에게 하교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3명의 학생들은 하교하지 않고 고무동력기 날리는 연 습을 하다가 비행기가 운동장 강당지붕에 걸리게 되었다. 마침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운동장 흙 고 르기 용도로 사용한 후 방치한 철재빔 구조물이 강당 옆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1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고무동력기를 내리기 위해 철재빔(사다리모형)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무거운 철재빔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사고학생(남)에게 넘어지면서 사고학생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때리고 연이어 사고학생이 넘어지면서 운동장 바닥에 있던 돌에 안면부를 충 격 당하였다. 즉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두개골 파열로 사망한 사고임.

(사례 3) 친구와 장난치고 달아나다 배구네트 기둥에 부딪혀 사망

ㅇㅇ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교동편 운동장에서 사고학생(남)과 동료급우와 서로 장난을 하 다가 급우가 잡으려고 쫓아오자 사고학생이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다 배구네트 기둥에 고정되어 있는 네트의 줄을 감아 올리는 회전식 손잡이에 얼굴의 인중부분을 심하게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사고임

(사례 4) 방화셔터에 깔려 부상

ㅇㅇ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별관 3층 음악실 입구 계단통로에서 사고학생이(남)이 동료들과 실내 화를 가지고 놀이를 하다 갑자기 작동하는 방화셔터 아래로 통과하려는 순간 셔터에 눌려 부상을 입은 사고

(사례 5) 청소중 교실용 스피커가 떨어져 부상

ㅇㅇ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이 교실에서 환경정리를 하던 중 교실용 스피커가 얼굴에 떨어지면 서 안면에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6) 기말고사 공부 중 선풍기 떨어져 부상

ㅇㅇ초등학교에서 사고학생(여)이 아침자율학습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학교에 등교하여 기말고사 공부를 하던 중 천정에 부착된 회전식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사고학생의 옆구 리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고.

(사례 7) 빗물막이에 매달려 놀다 떨어져 부상

ㅇㅇ중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청소기간에 사고 학생(남)이 자기 청소담당 구역인 교 실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 하고 창고 입구 빗물막이(2.6m)에 뛰어올라 매달리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가을청소지도를 하고 있던 지도교사가 발견하고 높은 곳에 오르내리면 위험 하니 장난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다시 매달리기 놀이를 하다 떨어지면서 우측 팔의 골 절을 입은 사고

(사례 8) 하교 중 교통차단 바리게이트에 걸려 부상

OO고등학교에서 교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사고학생이 정문 앞에서 교내외 차량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쇠사슬로 된 바리게이트에 사고학생의 다리가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스콘 포장의 요철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은 사고.

(사례 9) 교내 공사 중이던 굴삭기에 치어 부상

○○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남)이 학교예술제(영어연극)준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중앙현관 앞에서 학교내 도로포장 정지작업 중이던 포크레인(굴삭기)에 치어 좌측대퇴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사고.

(사례 10) 교내 공사분진으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고등학교에서 사고학생이 교내 리모델링 공사중인 학교계단을 내려가다 공사로 인한 분진 으로 바닥에 미끄러져 척추장해의 부상을 입은 사고.

(사례 11) 체육시간 휴식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척추 부상

○○고등학교에서 2학년에 재학중이던 사고학생이 체육시간에 학교운동장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벤치 뒤편에 있는 굵은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의 부상 을 입음.

(사례 12) 휴식시간 뛰어가다가 나뭇가지에 눈을 찔려 부상

○○중학교에서 사고학생(남)이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교사 후편 주차장 근처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달려가던 중 길 옆의 나뭇가지에 좌측 눈을 찔려 "좌안 안구파열, 망막박리, 외상성 백내장"등의 부상을 입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 실명의 장해를 입은 사고임.

(사례 13) 쓰레기 소각장의 부탄가스통에 맞아 우안 실명

O O 초등학교에서 학교 관리직원이 학년 초 각 교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본관 뒤쪽 박스 옆에 임시 소각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태우고 불씨를 제거한 후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갔다. 이 때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다수 학생들이 소각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꺼져 가는 불씨를 집혀 불장난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사고학생이 소각장 옆을 지나치다 소각장에서 뜨거워진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폭발로 날아가면서 사고학생의 우측 눈에 맞아 우안 실명의 신체 장해를 입은 사고임.

(사례 14) 복도에서 급하게 뛰다가 유리에 목을 찔려 사망

O O 중학교에서 휴식시간에 동 학교 학생이 교실에 있던 깨어진 유리를 버리려고 손에 들고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사고학생(남)이 복도를 급하게 달려오다 동료급우에게 부딪히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가 사고학생의 목을 찔러 119구급차량으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과다한 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사례 15) 교실문 틈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

○○초등학교에서 휴식시간에 사고학생(여)의 할아버지가 집에서 학교준비물을 가지고 와 사고학생은 준비물을 받아들고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던 중 세찬 바람에 교실 뒷문이 갑자기 닫히면서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사고학생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같은 반 동료가 보고 지도교사에게 알려 절단된손가락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급히 학교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찰결과 오른손 수지의 절단창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16) 돌아가는 세탁기에 손을 넣다 팔 절단의 부상

OO중학교에서 오전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축구부 선수인 사고학생(남)이 운동복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하다가 설정된 세탁시간이 지나 세탁기가 자동으로 멈춘 줄 알고 세탁기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다시 문을 닫고 전원 스위치를 여러 번 누른 후 조금 기다리다 세탁기 작동이 멈췄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세탁기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게 되었다. 그러한 순간에 옆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쪽을 쳐다보다가 세탁기의 돌아

가는 탄력으로 어깨 밑 오른쪽 팔이 세탁기 속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세탁실에서 기어 나오는 사고학생을 동료학생이 발견하여 축구부 감독교사에게 알리고 붕대와 수건으로 압박, 지혈을 시키면서 즉시 119구조대 신고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잘려진 팔의 봉합수술을 받은 사고임.

감전사고

(사례 1) 학교 변전실에 들어가다 전기감전으로 부상

O O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경찰과 도둑찾기" 놀이를 하던 중 사고학생(남)이 숨을 장소를 찾기 위해 학교 본관 뒤 기계실(옥상에 변전실이 있음)의 옥상으로 올라가 변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 날은 마침 오전에 첫 눈이 오고 약간의 비가 와 사고학생의 옷이 젖어 있는 관계로 고압전류가 흐르는 봉에 옷이 스치면서 전기 감전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온실청소를 하다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

○○여자고등학교에서 원예반 반장인 사고학생(여)이 개학 후 실시예정인 축제준비를 위하여 원예반 학생 2명과 함께 온실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온실 뒤편에 위치한 전기배전판에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쌓아놓은 폐화분 및 보도블럭 등이 있었는데 사고학생이 이것을 치우다가 전날 비가 와서 미끄러워진 바닥 때문에 넘어지면서 배전판에서 본관으로 연결되는 전기닥트에 몸이 닿으면서 사망한 사고임.

(사례 3) 정수기에 물을 먹으려다 감전으로 부상을 입음

○○고등학교에서 사고자는 저녁급식을 하고 난 후 정수기에 물을 먹으려고 컵을 갖다 대는 순간 손이 감전되고, 바닥에 흐른 물을 밟고 옆에 서 있던 학생도 함께 감전이 되는 부상을 입은 사고임

체육시설물사고

(사례 1) 축구골대에 깔려 좌측 폐를 절단하는 부상

O O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인솔 하에 운동장 청소를 하던 중 사고학생(여)외 2명의 학생이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축구골대의 그물망에 올라가 잡아당기는 등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이 와서 함께 축구골대를 흔들면서 놀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그 골대에 사고학생이 깔려 병원에서 좌측 폐를 절제하는 신체장해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2) 축구골대에 깔려 우측 다리 골절의 부상

O O 초등학교에서 5학년에 재학 중인 사고학생이 종례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던 중 여러 학생들과 함께 축구 골망을 타고 올라가 서로 떨어트리기 시합을 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우측 족관절 외과 성장판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3) 축구골대에 깔려 사망

○○중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동 학교 2학년 학생 40여명이 며칠 후 있을 교내 체육행사인 줄다리기 경기를 위한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축구골대에 밧줄을 메고 잡아당기는 연습을 하다가 축구골대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사고학생의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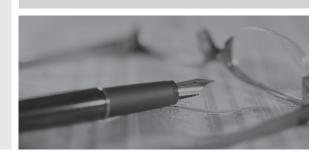
(사례 4) 이동식 핸드볼 골대에 깔려 부상

○○중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축구수업을 하던 중 골키퍼를 보고 있던 사고학생(여)이 이동식 핸드볼 골대에 매달리며 놀다가 갑자기 골대가 쓰러지면서 골대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5) 그네타다 그네에 머리를 맞아 사망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시간에 사고학생(남)이 태권도 학원을 가기 위해 학원에서 운행하는 승합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원차가 올 시간이 남아 학교내 유치원 놀이터에서 원형흔들 그네에 발을 걸어 심하게 반동을 주면서 타고 놀던 중 두 손을 놓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순간 반동에 의해 올라 갔던 그네가 다시 내려오면서 사고학생의 왼쪽머리 부위를 때려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고 주위에서 학교 일을 보던 교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동년 4, 12, 사망한 사고임.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6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 1. 사고예방을 위한 교원의 유의사항
- 2. 교육활동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 3. 안전교육의 주요방향
- 4.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의 대처요령

제**6**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I / 사고예방을 위한 교원의 유의사항

-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활동 시간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떠나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학급전체를 상대로 명확하게 지시하고 질서를 위한 대리인 지정
-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체육시간(준비운동 포함), 과학실험 실습시간, 야외현장체험학습 시, 사전교육
- 학생들의 지병을 확인하여 격렬한 체육활동에서 열외를 시키는 등 특별관리
- 현장학습, 수학여행, 특기적성교육 등 교외교육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 차량이용 시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계약
- 수련원. 야영장 업체 계약시
 - 「청소년활동진흥법,의거 배상책임보험가입 확인
 - 계약서 작성: 안전사고발생에 대한 보상주체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사고발생시 : 업체측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진술서 확보
- 놀이시설 계약 시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의거, 배상책임보험가입 확인
- 숙박시설 이용 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
- 고층교실 베란다, 계단난간에서 장난이나 미끄럼을 타는 행동 금지, 안전수칙 준수
- 고층계단난간에 안전철봉 설치 등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의 수리 보완
- 학생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심부름 금지
- 안전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
- 학생 간 집단따돌림 또는 폭력발생 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 관찰일지 및 상담일지 작성
- 학교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사고 발생 시, 학교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시설물관리에 대한 법적책임 수반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 저학년 아동의 경우, 교원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 필요
- 신체적 · 인지적인 면에서 매우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절대적인 보호 요구
- 지적장애, ADHD, 자폐성 아동 등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특별관리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3GO 운동 전개
- 교원이 오전 · 점심시간, 방과 후 등을 이용하여 하루 3회 놀이터,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을 교대로 순회하면서 생활안전지도

Ⅱ 교육활동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1. 운동장 및 체육시설물 사용수칙

- 가)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수칙을 준수
- 나) 체육시설물(철봉대, 평행봉, 농구골대, 축구골대 등)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다) 운동장주변(하수구, 맨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 라) 운동장은 고형물질(나무, 돌, 철, 유리 등)을 제거
- 마) 공을 이용 운동할 때에는 과격한 몸싸움 않기

2. 실험실에서 안전수칙

- 가) 실험약품은 반드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기
- 나) 함부로 만지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다) 깨진 유리병이나 성냥개비. 시약의 폐기물을 함부로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다.
- 라) 알코올램프 사용 시에는 특기 화재 등에 주의
- 마) 실험중 발생한 돌발사고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지도교사에게 알려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한다.
- 바) 과학수업이 끝났을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주변의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실험실 시건장치를 철저히 한다.

3. 실내에서 안전수칙

- 가) 책가방은 반드시 책상 옆에 걸어두고 바닥에 소지품을 두지 않는다.
- 나)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유리창 주변에서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다) 복도와 계단을 지날 때는 반드시 우측보행을 하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 라) 바닥에 물기는 흘려 놓지 않고 흘린 즉시 제거
- 마)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맞은편에 학생이 있는지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열고 닫는다.

4. 학교 밖에서 안전수칙

- 가)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녹색등이 들어와도 차량이 멈추었나 확인하고 건너간다.
- 나) 바닷가나 계곡에서는 반드시 교사의 지시를 따르고 개인행동은 하지 않는다.
- 다) 가을철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한다.
- 라) 산행 시에는 건강상태 확인 후 환자 및 요주의 학생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조치한다.

교외 안전교육시 주의사항

- 등하교 및 차량탑승과 하차 시 주변주시 철저
-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차량뒤편 위험성 강조
- 여름철 수상안전지도 철저(위험지역 접근엄금)
- 특히, 중학생들의 물에서의 2분 위험성 강조
-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동차 운전의 위험성
- 오토바이 탑승 엄금(학부모동의서 제출 시 가능)
- 단체이동시 차량고속주행방지
- 커브길 및 비탈길 주행 시 각별히 유의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의 대처요령

- 중대한 안전사고발생 시, 책임이 있는 자가 신속히 대처하여 수습하도록 한다.
 - 보건교사, 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 등
- 중대한 사고 시, 피해자의 후송 등은 119에 신속히 연락하여 처리한다.
- 현장을 잘 보존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다.
- 사고에 대해 경험 있는 자(전문가, 학교안전공제회 등)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 소송 및 각종조사에 대비. 사고발생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과 관련기록을 확보한다.
 - 사고현장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목격자
- 학부모의 불법행위(폭언, 협박, 폭행 등)가 있는 경우, 상당기간이 경과 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격자진술서, 진단서, 녹취록기사, 사본 등을 확보하여 보관한다.

- 사고발생 시부터 사고 종결 시까지 진행과정을 일기형태로 상세히 기록한다.
-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 · 학교관리 자. 사건관계자 등 주기적인 병원방문이나 성의 있는 언행을 하도록 한다.
- 성적이나 출석처리 등은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토록 한다.
- 사고처리과정에서 사고담당자 지정 등 학교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토록 한다.
- 사건결과를 예단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하지 않으며 또한 불필요 한 논쟁으로 사건의 본질을 제쳐두고 감정을 상하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치료비. 위자료 등은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노력하되, 합의서, 영수증 등은 반드시 확보한다.
- 잘못된 사실관계가 언론 등에 공표되지 않도록 보안에 힘쓴다.
- 사고처리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당사자(친권자 등)와 협의토록 한다.
- 학교사고가 소송으로 비화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요청한다.
- 학교분위기가 사고에 휩싸여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원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사고는 피해자측에서 교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시 · 도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분명하 게 안내하여야 한다.
- 교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사립학교교원은 민법 제756조 규정에 의거, 설치 · 경영자인 국가(시 · 도교육감) 또는 학교법인이 우선 배상하 고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7**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M**7**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정 2007.1,26 법률 제8267호] 최초시행일 2007. 9. 1 [법률 제11690호 2013.3,23 일부개정] | [제정 2007,8.29 대통령령 제20237호] [일부개정 2013,3.23 대통령 제24423호] | [제정 2007,8,30 교육부령 제912호] [일부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9, 2012,1,26〉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한다)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한다) 다.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함은 학교에 입학하여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을 말한다. 〈개정 2012.3.30〉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 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 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 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 법에 의한 왕복 시간 | |

-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 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 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 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 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 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 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 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 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 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 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 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 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 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 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삭제(2010.3.17)

제3조(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2. 일사병(日射病)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4조 삭제(2010.3.17)

제4조 (급여원부의 작성)

-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 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①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1.26. 2013.3.23〉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 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 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 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 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 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 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 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12,3,30)

제5조 삭제(2010.9.27)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 2. 비상탈출구
- 3. 운동장
- 4. 놀이시설
- 5. 실험실습시설
- 6. 체육시설
- 7. 교실(출입문 포함) · 복도 · 난간 · 계 단 · 현관 · 교문
-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 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 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②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 · 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②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④ 학교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6〉

제7조 삭제(2010.9.27)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개정 2012,3,30)
-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 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 유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 교육
-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 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 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한다.(신설 2012,3,30, 2013,3,23)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조치)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 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 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6]

제3장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 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 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 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 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 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 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 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 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 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개 정 2012.1.26〉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 ①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 전공제에 가입한 외국인학교의 학교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 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 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탈퇴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당해 학교가 폐쇄된 때에 발생 하다.

제11조 삭제(2012330)

제9조 (공제료의 납부)

- ① 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 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 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 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 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 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 를 내야 한다.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 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 인학교에 재학·재직중인 학생·교 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 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 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 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 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 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 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 를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 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 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 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 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 때
-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 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 으로 전보된 때
-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 여를 마친 때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 하기 위하여 해당 시 · 도에 학교안 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0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 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 전기 등의 안 전점검 대행
- 2, 소독 · 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제16조(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 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 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본조신설 2012,3,30]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 실률 등)

- ①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 실률은 별표 2와 같다.
- ②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 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 ③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 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 ④ 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 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 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하다.

제17조(정관)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개정 2012.3.21〉
-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0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 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 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
-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 탁하는 사업
-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
-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2.3.21〉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 ①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 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 상임으로 한다.
- ② 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 고, 공제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 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 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 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6)[제목개정 2012.1.26]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①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 육감이 임명한다.

-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 전점검 대행
- 2. 소독 · 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본조신설 2012,3,30]

- ②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 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 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 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보호자등" 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07.4.11>
-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 법」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 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 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 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 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 는 자
-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 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 4.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 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 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하고 있는 자
- ③ 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 감이 임명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손익상계)

- ①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 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 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 ②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 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 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③ 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이사회)

- ① 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 는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 · 의결한다.
-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변경 및 집 행에 관한 사항
-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 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에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 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 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이사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 원을 임면한다.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 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지도·감독)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 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 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 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 · 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 문 · 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 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심사위원회에서 심리 · 결정하는 사 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위원에게 심리 ·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 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 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 ·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 ·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 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1.26). (개정 2012,3,21
-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 한 조사 · 연구
-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 · 연구
-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2,3,21〉

제10조의3(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 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 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 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3.30]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 ① 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 으로 하다.
- ②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 제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감사(監事)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 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 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 · 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자가 1 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 정 2008.2.29.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 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 한다.(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 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대표 하는 자 3명
- 2.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 4.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2명
-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 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

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 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 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 ① 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 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 · 제3항.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 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제6장 공제급여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 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급여
- 2. 장해급여
- 3. 간병급여
- 4. 유족급여
- 5. 장의비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 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 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 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 · 도의 피 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 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 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 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 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 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 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 결"로 본다.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 34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 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 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9.27, 2012.8.31, 2013.3.23

-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 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 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 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 (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 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 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 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 른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 다.[본조신설 2012.3.30]

-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 도재전장 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 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 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 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 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 급한다.
-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 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 용만 지급한다.
- 6.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 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 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 강보험법」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다.
-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 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교육부장 관이 정한다.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 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 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 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 태 등 주관적 요소
-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 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등
- 3.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 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 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 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 ①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 5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 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 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 동임금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 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 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 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 금에 따른다.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 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 급여액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 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 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 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 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 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 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 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 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 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 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 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 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 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 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 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 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 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 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 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2,3,30]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 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 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 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 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 어야 한다.
-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 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 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 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 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 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3.30]

제36조(요양급여)

-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 자등에게 지급한다.
- ②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 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 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에 따라 공 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 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개정 2011,12,31, 2012,3,21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찰 · 검사
- 2.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재활치료
- 5. 입원
- 6. 가호
- 7. 호송
- 8. 의지(義肢) · 의치(義齒), 안경 · 보청 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종전 제4항 은 제5항으로 이동 2012,3,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개정 2012.3.21)

제37조(장해급여)

-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 정기준 · 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 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 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 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 태 등 주관적 요소
-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등
- 3.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 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 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 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 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 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 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 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 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 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 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 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 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 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 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 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 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2,3,30]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 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 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 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 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 어야 한다.
-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 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 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 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 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 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3.30]

제38조(간병급여)

- ①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 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 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유족급여)

-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 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 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 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 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 1.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 2. 부양사실이 인정되는 호적상 가(家) 를 달리하였던 자녀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 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 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 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 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 태 등 주관적 요소
- 2.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 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 3. 사고 당시 「병역법 상 군복무기간, 피 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 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 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 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40조(장의비)

- ①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 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 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위로금)

-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 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 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 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본 조신설 2012.3.21]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 ①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 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 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 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 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 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 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 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 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 할 수 있다.
- ⑤ 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 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 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 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 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 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 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다.[본조신설 2012.3.30]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 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 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 다.[본조신설 2012.3.30]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 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 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 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 ②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 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 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 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 게 알려야 한다.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 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 을 알려야 한다.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 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 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 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 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진 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 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 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 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 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 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 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 급한다.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 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 질 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 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 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 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 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 은 경우
- ② 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 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 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 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 금의 청구 등)

-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 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 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 고가 발생한 경우
- ②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다른 보상 · 배상과의 관계)

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 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 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 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 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 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30]

자치단체 ·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 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 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의 책임을 면한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 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 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제46조(부당이득의 화수)

-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 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급여를 받은 경우
-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 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 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다.

제47조(수급권의 보호)

- ①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 입한 학교에서의 졸업·퇴학 등 신 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다.
- ②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비용의 보전)

- ①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 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 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 절차 및 보 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 자
-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 으로 위촉된 자
-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 치 · 경영하는 자

제6조 (부당이득의 환수)

- ① 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 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 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 을 내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전)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 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 · 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
-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
-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 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7장 공제료

제49조(공제료)

- ①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 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 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 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 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 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 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 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 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 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 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 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 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 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 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 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 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 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 ① 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 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 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 1. 공제료의 금액
- 2. 납부기한
- 3. 납부장소
- ③ 공제료의 납부기한 · 납부방법 · 납부 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 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07.7.27. 2011.5.19, 2011.8.4, 2011.9.15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 규 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 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 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2012,3,21〉

제9조(공제료의 납부)

- ① 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 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 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 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 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 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 를 내야 한다.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 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 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 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 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 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30]

제8장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 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 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하다.
-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 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 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 다.(개정 2012.3.21)
- 1. 공제급여의 지급
-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 · 연구 · 홍 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 교육지 워 사업
-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 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 한다.(개정 2012.3.30)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 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 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 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 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 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 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 을 수 있다.
- ④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 설 2012.3.30]

제54조(기금의 관리 · 운용)

-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 · 운용한다.
-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 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 ③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56조(잉여금 · 손실금 · 차입금)

-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 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 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 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 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 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 · 운용) 법 제54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이란「증권거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 업을 말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 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 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 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 · 지변 · 전쟁 ·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1. 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 3.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아 날
- 4.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 6. 심사청구의 연월일
- ②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 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 2.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 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 ③ 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 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 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 ④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보정 및 각하)

- ① 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 난 후 제기되었을 때
-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 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 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①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 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
-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 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 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 4. 주문(丰文)
- 5. 심사청구의 취지
- 6. 이유
- 7. 결정 연월일
-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 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 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 려야 한다.

제58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 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 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 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 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의 운영)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 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 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 · 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 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 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 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 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 을 수 있다.

-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 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7 학부모 대표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 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 ④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위원의 배우자, 4초 이내의 혈족, 2초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 문 · 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 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심사위원회에서 심리 · 결정하는 사 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는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 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 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 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 · 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 :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 ① 심사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 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 술하게 하는 것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 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심사청구 사건명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 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 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 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④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 설 2012,3,3이

-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 출하게 하는 것
-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 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 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 다.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 4. 조사의 결과

제60조(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 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 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 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 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 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 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 · 지변 · 전쟁 ·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 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 ①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를 심리 · 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 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 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 의 결정 내용
-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
-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 회의 운영)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 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 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 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 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 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 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 고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 력이 있는 자
- 6.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 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7. 학부모 대표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 하는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재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 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 한 심리 ·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 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 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

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64조(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 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 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 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 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 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65조(시효)

- ①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 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 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 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자료의 제공 요청)

- ① 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 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 정된 직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에 종사 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제회 · 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1장 벌칙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 · 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 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벌칙)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 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공 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 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 부한 자
-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하 자
- 4.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73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 ①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 부과 ·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 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267호,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1.4.5]

부칙 (제20237호, 2007,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전 발생한 학교안전사 고에 대한 공제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에 대한 공제급여는 「민법」에 따라 설립

제11조 삭제(2012,3,30)

부칙 (제912호, 2007.8.30)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 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 ② 설립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 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 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 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 이 임명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 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 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 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 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 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 한 경과조치)

- ①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 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 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 인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 · 의 무는 공제회가 포괄 승계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 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 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 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제77조 · 제78조 · 제80조 · 제82조·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 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 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 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 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구역별로 운영하 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학교안전공 제회를 포괄 승계한 공제회가 지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074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차 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 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 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28〉 까지 생략

〈1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 로 한다.

부칙 〈제22402호, 201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2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부칙(제23688호, 2012.3.30)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 지 생략

〈46〉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 제142호 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지급기준 적용례) 제2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 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시기) 제9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회 에 지원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2012년 도에 해당하는 경비는 2012년 12월 31 일까지 지급한다.

부칙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 지 생략

〈57〉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 부령"으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제8366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부칙 제20조제 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6〉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 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8566호.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 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 까지 생략

〈107〉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 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 호 중 "교육인적지원부장관"을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 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항의 시행 후에 발 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07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28〉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 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제51 조제2항"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 지 생략

〈88〉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 로 하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05)까지 생략

[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제10조 제1항관련]

[별표 2] 신체장해의등급과노동력상실 률표[제16조제1항관련]

[별표 3] 2개부위이상의신체장해종합평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 자워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 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 · 제2항, 제7조제1항, 제28 조. 제31조제1항 · 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 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 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 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한다.

(108)부터 (760)까지 생략

부칙 〈제10090호, 2010.3.17〉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1호, 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11029호, 2011.8.4)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 지 생략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관련]

[별표 4] 간병급여의지급대상및지급기 준[제17조제1항관련]

[별표 5] 신체장해에대한위자료기준표 [제19조관련]

[별표 6] 사망에대한위자료기준표[제19 조관련]

[별표 7] 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표[제 20조제1항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 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생략

부칙 〈 제11042호, 2011.9.15〉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4〉까 지 생략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 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로 한다.

⟨26⟩ 및 ⟨27⟩ 생략

부칙 (제11141호, 2011.12.31) (국 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7〉 까지 생략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국민건강보험법」제 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제 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 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법률 제11221호, 2012.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11387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관 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로 본다.

부칙 〈 제11690호, 2013.3.23〉 (정부 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75〉 까지 생략

〈76〉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 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 제2항, 제 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 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 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 를 "교육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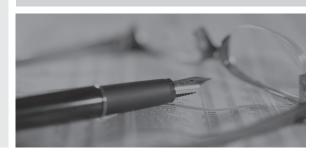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 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 제1항·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 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 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 로 한다.

〈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제**8**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 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 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 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 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 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 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 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 생을 말한다.
-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서 규정하 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조(성과 평가 및 공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초·중등교육법」 제 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 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21)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 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3.21]

-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 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 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 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 식이 있는 사람

-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 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 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 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 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 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3,23〉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5. 판사·검사·변호사
-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 로 담당한 사람
-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 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 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7)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3.21]

-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⑤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⑥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 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7)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 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 ·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 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 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 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다"시지고 · 시시지고 · 시시지고 · 시시지고 · 생시 차지벌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 3.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5. 판사·검사·변호사
 -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 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 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 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 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하다)의 위워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 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⑦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 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법 제9 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 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 년 수립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 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 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 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 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 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 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 군수 · 구 청장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 거나 위촉하다.
-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 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지역교육청 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과장을 말한다)
-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5. 판사·검사·변호사
-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 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 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 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 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 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 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 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 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 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 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 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 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 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 다. 〈신설 2012.3.21〉
-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 육공무원법, 제50조 및「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 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 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 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에 과 : 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 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 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 감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 · 조 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 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 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 · 시 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2,9,14>
 -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보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 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 가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설
 -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 교 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 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1) 교육감은 학교폭 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 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 탁할 수 있다.

- -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 · 검사
 -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 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 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2.3.21]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 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 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 기능) ① 학교폭 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 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 〈개정 2012.1.26〉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 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2,3,21〉

-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 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 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 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 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 고받은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 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야 한다. 〈신설 2011.5.19〉
 -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다.
 - 1. 해당 학교의 교감
 -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 4. 판사·검사·변호사
 -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 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 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⑥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 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 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라 전 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 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 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 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 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 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 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제13조(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 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 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 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 이 및 방음시설

-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 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2009.5.8, 2012.3.21〉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 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 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 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 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 우만을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 체적 전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 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 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 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 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 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 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 이 정한다.
 -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 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 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 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 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 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 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 서에 따른 하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 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 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 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 는데 드는 비용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삭제 〈2012.3.21〉
-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 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 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2.3.21〉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 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 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 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 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 1. 삭제 〈2012,3,21〉
- 2. 삭제 〈2012.3.21〉
-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신설 2012.1.26, 2012.3.21〉
-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 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설 2012.3.21〉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 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 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 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으로 한다.
-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가해학생
 -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 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 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 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 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 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 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 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 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 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 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 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 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 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 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 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09,5.8, 2012,1,26, 2012,3,21〉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 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 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 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 의성
 -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 해의 정도
 -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 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 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 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 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 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 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 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 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 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 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 정 2012.1.26. 2012.3.21〉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 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 ①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 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12.3.21〉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 사한 경우
-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 힌 경우
-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 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 · 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자 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 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 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 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 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2012.3.21〉
-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가해학생

-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 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초·중등교육법」 제18 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 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신설 2012.3.21〉
-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12.3.21〉
-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 초 · 중등교육법」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12.1.26]

-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 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 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7)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 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 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 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 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 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 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 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 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 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 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 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 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 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 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 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
|--|--|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3.21〉 | |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본조신설 2009.5.8] |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 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
|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3,21] | |
|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

-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 기통신역무 요금
-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3,21]
-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 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 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 설 2012,3,21]
-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 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 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 · 설명회의 개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 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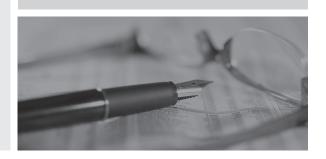
-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6제 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 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 견 청취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 |
|--|--|
| 제22조(벌칙) ①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 |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부록

각 종 서 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학교시설 안전 관리기준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별표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별표4)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별표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별표6)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별표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별표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별지1호서식) 공제급여 청구서

(별지2호서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청서

(별지3호서식) 공제료 이의 신청서

(별지4호서식)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별지5호서식) 학교폭력사고 발생 확인서

목차 CONTENTS

부록 / 각종서식

| - | 학교안 |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별표1) | 학교시설 안전 관리기준 | 158 |
| | (별표2) |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 163 |
| | (별표3) |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 167 |
| | (별표4)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168 |
| | (별표5) |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169 |
| | (별표6) |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 170 |
| | (별표7)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 170 |
| | (별표8)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171 |
| _ | 학교안 |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별표〕 요 |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 172 |
| | (별지1호 | :서식) 공제급여 청구서 | 174 |
| | (별지2호 | 서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청서 | 176 |
| | (별지3호 | :서식) 공제료 이의 신청서 | 177 |
| | (별지4호 | 서식)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178 |
| | (별지5호 | :서식) 학교폭력사고 발생 확인서 | 18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분야 | 안전기준 |
|-----|---|
| | 1. 건축물 주변 :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
| |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
| | 2. 교실바닥 |
| |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3. 교실벽 |
| |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
| | 4. 교실문 |
| |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건축물 |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cm 이상으로 한다. |
| LTE |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 |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
| |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 을 여유 있게 한다. |
| | 3)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
| |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5. 교실 창호 |
| | 가. 내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
| |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
| |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 1)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 |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바깥 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6. 특별교실

-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 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복도

-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 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8. 계단

-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 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 하다.
-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챌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 2) 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
- 2)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
- 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 2)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 4)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5) 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 에는 15cm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6)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 9. 화장실: 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
 - 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다. 난방기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10. 그 밖의 사항

-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파손이 어려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2. 분전반: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 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3. 전기배선: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

전기 시설

-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 · 절연저항 ·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한다.
-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 록 하다.
- 4. 조명설비: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 여야 하며, 먼지 · 벌레 · 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 5. 전열설비: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 려하다.
-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 ~ 300mm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 ~ 1,000mm 정도로 한다.
-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 마. 전기 용량이 $30 \sim 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1. 냉난방설비

설비 시설

- 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환기시설
 -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 설비 시설 |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 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 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소방 시설 |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状)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 이불 수 있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가스 시설 | 1.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배관: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3. 가스 기기: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

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회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 야 한다.
-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 를 비치하여야 한다.
-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한다.

실험 실습 시설

-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 게 알 수 있도록 제작 · 비치하여야 한다.
- 2. 약품보관설비
-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 운 구조이어야 한다.
-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 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 -

| 등급 | 신 체 장 해 | 노동력 상실률 (%) |
|-----|---|-------------------|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全廢)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肘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100 |
| 제2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자 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 100 |
| 제3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 100 |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폐용(廢用)된 자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90 |
| 제5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 80 |

| 제6급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廢用)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70 |
|-----|---|----|
| 제7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中等度)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한 모양이 남은 자 | 60 |
| 제8급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착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 50 |
| 제9급 |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 · 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변상(視野變相)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40 |

| 제9급 |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
|------|---|----|
| 제10급 |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가 폐용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 30 |
| 제11급 | 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 20 |
| 제12급 |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長關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 15 |

| |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 |
|------|--|----|
| 제13급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末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 10 |
| 제14급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5 |

- (주)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 정한다.
 - 2. 손가락의 상실(喪失)이란 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指關節),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 실한 경우를 말한다.
 -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의 경 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 14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13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2 | 12 | 11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1 | 11 | 10 | 10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10 | 10 | 9 | 9 | 9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9 | 9 | 8 | 8 | 8 | 8 | 8 | 7 | 6 | 5 | 4 | 3 | 2 | 1 |
| 8 | 8 | 7 | 7 | 7 | 7 | 7 | 6 | 5 | 4 | 3 | 2 | 1 | 1 |
| 7 | 7 | 6 | 6 | 6 | 6 | 6 | 5 | 5 | 4 | 3 | 2 | 1 | 1 |
| 6 | 6 | 5 | 5 | 5 | 5 | 5 | 4 | 4 | 4 | 3 | 2 | 1 | 1 |
| 5 | 5 | 4 | 4 | 4 | 4 | 4 | 3 | 3 | 3 | 2 | 1 | 1 | 1 |
| 4 | 4 | 3 | 3 | 3 | 3 | 3 | 2 | 2 | 2 | 1 | 1 | 1 | 1 |
| 3 | 3 | 2 | 2 | 2 | 2 | 2 | 1 | 1 | 1 | 1 | 1 | 1 | 1 |
|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주)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별표 4] 〈개정 2010.7.12〉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
|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제5호에 따 른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 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
|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 가. 피해자 본인 | 그 밖의 경우 |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주)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6]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 구 분 | 금 액 |
|--|---------------|
| 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다. 부모 · 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 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20조제1항 관련)

| 구 분 | 생활비 비율표 | | |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35퍼센트 | | |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30퍼센트 | | |

[별표 8] 〈개정 2011.4.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웨다 버그저 | 과태료 금액 | | | |
|---|-----------|--------|------|-------|--|
| 기간영기 | 해당 법규정 | 1회 | 2회 | 3회 이상 | |
| 1. 법 제26조(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1호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2.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 출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2조제2호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통지를 한 경우 | 법 제72조제3호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2조제4호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12.3.30〉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 구분 | 내용 |
|-----------------------|---|
| 가. 선택 진료비 | 1) 선택진료비는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요양한 기간 나)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병상태(傷病狀態)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초음파 검사료는 진료기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 다. 무통 주사제 |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라.화상 치료재등 | 화상 또는 열상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치료재와 치료보조재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마. 성형 수술비 | 1)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한다. 나) 인정횟수는 2회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반흔 또는 변형 등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 바. 응급 의료 관 리료 | 영 제14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
| 사. 물리 치료 |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리치료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인 경우 |

| 아. 치아 보철 |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도재전장관(陶材前將冠)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회에 한한다.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3)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1)에 준하여 인정한다. |
|--------------------------------|---|
| 자. 재활보 조기구 및 통합 재활 훈련 |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지(義肢)・보조기・구두・휠체어・목발・보청기・안경・콘텍트렌즈・의안・ 가발・흰지팡이・인공후두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안경과 보청기는 해당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 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가액은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한다.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筋電電動義手) 배터리의 경우 내구연한을 2년, 휠체어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1년으로 한다. 의지 및 보조기 장착 후 통합재활훈련 대상은 휠체어를 사용 마비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
| 차. 진단서 발급 수수료 | 1) 진단서는 진료비가 본인부담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제출한다. 다만, 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한다. |
| 카. 외국체류 중에치료를 하고 요양급여 승인을받은 경우 | 1) 환율의 적용시점은 외국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한 때로 하며,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따른 금액 나)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

- 비고 1. 요양급여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가에 따른다.
 - 2.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법 및 영 등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및 비용 중에서 피공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
 - 3. 공제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치료 받기 전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 중간 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방식은 호프만식에 의한다.
 - 가.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3.30〉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앞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 여(위로금, 보전비용)를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공제회 이사장 귀하

|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
| | 피공제자와의 관계 | | | |
| 청구인 |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도 | 고든 권한을 위임함 | | |
| | 위임인 | 성명 | | |
| | | 성명 | 주민등록 | 번호 |
| | 대리인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 | ᆕᄓᄀᄗᅥ | | | |
| 7 -4-101-1 | 학교명 | | | |
| 공제가입자 | 학교장 | | | |
| | 주소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 피공제자 | 주: | 소 | | |
| | 소 | 속 | | |
| | 발생일시 | | | |
| 사고개요 | 발생장소 | | | |
|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 사고관련자 소속 | | 성명 | |
| , | 사고경위 및 내용 | | | |
| | 요양급여 | | 장의비 | |
| | 장해급여 | | 보전비용 | |
| 청구액 | 간병급여 | | 위로금 | |
| | 유족급여 | | 기타 | |
| | 합계 | | | · |
| 구비서류 | 뒷면참조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뒤쪽)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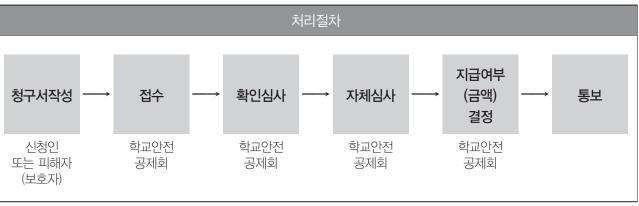
-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비고 |
|------------|--|----|
| 요양급여 |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주민등록등본 | |
| 장해급여 |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 | |
| 간병급여 |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주민등록등본 | |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 |
| 보전비용 |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 |
| 위로금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imes 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3.30〉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 | 학교명 | | | | | | |
|-----------------|-------------|----------|-----------|----|--------|-----|-------|
| | 사건번호 | | | | 보고일자 | | |
| 일반사항 | 1137 | 성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학년반 | 사고자구분 |
| | 사고자 | | | | | | |
| | 지도교사 | | 작성자 | 성명 | | 연락처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사고관련자 | 학년 | <u> </u> | | | | | |
| | 사고관련제 | 다 구분 | | | | | |
| | | | | | | | |
| | 사고일 | | | | 사고부위 | | |
| | 사고시 | | | | 사고당시활동 | | |
| 사고내용 | 사고징 | 소 | | | 사고의도성 | | |
| | 사고형 | JEH . | | | | | |
| | 사고매기 | 개물 | | | | | |
| | | | | | | | |
| | U = 7110 | | | | | | |
| , | 나고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 내용 | 및 안전교육 니 | 내용 | | | | | |
| <u> </u> —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3.30〉

공제료 이의 신청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료에 대하여 이 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공제회 이사장 귀하

| | | T | | | |
|-------------------|--------------------------|--------|--|-----|---|
| | 학교명 | | | | |
| 공제가입자 | 공제가입자 성명 | | | | |
| | 전화번호(학교) | | | | |
| 피공제자 현황 (기준일 : | 학생 | 1학년 | | 4학년 | |
| | | 2학년 | | 5학년 | |
| | | 3학년 | | 6학년 | |
| | 교원 | | | | |
| 매년 4월 1일) | 일반직 및 기능직 | | | | |
| | 일용직 등(공제회 가입자) | | | | |
| | 계 | | | | |
| 고ᅰ근 | 공제회 산정액 | 이의 신청액 | | 증 | 감 |
| 공제료 | | | | | |
| 이의 신청 사유 | ※ 상세한 내용은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 | | |

신청인(공제가입자)

(서명 또는 인)

○ **학교장**(직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2.3.30〉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앞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공제회 이사장** 귀하

| | 성명 | (인) | | 주민등 | 록번호 | |
|--------------------------------|--------------------------------|----------|--|-----|-------|-----|
| | 주소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피공제자와의 관계 | | | | | |
| 청구인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 | | | | |
| | 위임인 | 성명 | | | | |
| | | 성명 | | | 주민등록반 | 1ুক |
| | 대리인 | 주소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공제가입자 | 학교명 | | | | | |
| | 학교장 | | | | | |
| | 주소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피공제자 | 주소 | | | | | |
| | 소속 | | | | | |
| | 발생일시 | | | | | |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 발생장소 | | | | | |
| (경제인 것 은 별지에 적음) | 사고관련자 소속 | | | 성 | 명 | |
| | 사고경위 및 내용 | | | | | |
| | 심리상담 | 함 및 조언 | | | | |
| 청구액 | 일시 | 보호 | | | | |
| 3T4 | 치료 및 치료 | 문를 위한 요양 | | | | |
| | ē | 다. 다. | | | | |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뒤쪽)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 1. 청구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비고 |
|-------------------|--|----|
| 심리상담 및 조언 |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
| 일시보호 |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치료비 등의 청구서작성 접수 확인심사 자체심사 지급여부 통보 (금액)결정 학교안전 학교안전 학교안전 피해학생 학교안전 및 보호자 공제회 공제회 공제회 공제회

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2.3.30〉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앞쪽)

| 사건번호 보고일자 학교명 학년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지해자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 | | | | | | |
| 피해자 | | | | | | | |
| 피해자 | | | | | | | |
| | | | | | | | |
| <u>ш</u> ыл | | | | | | | |
| | | | | | | | |
| 지도교사 작성자 작성자연락처 | | | | | | | |
| | | | | | | | |
| 보호자정보 학교명 학년반 성명 <u>보호자정보</u>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업 주 | <u></u>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가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일자 부상부위 | | | | | | | |
| | 전치 ()주 | | | | | | |
| 사고내용 사고장소 사고 의도성 여 [|] | 부[] | | | | | |
| 진단명 | | | | | | | |
| 신고기관 교육청 [] 경찰서 [] 학교폭력관련기관 [| 신고기관 교육청[] 경찰서[] 학교폭력관련기관[] 기타[] | | | | | | |
| | | | | | | | |
| 사고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 후 학교 지도내용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 | | | | | | |
| | | | | | | | |

(뒤쪼)

| | | | | | | (귀녹) |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 해당여부 | [|] 학교폭력다] 학교장 긴급 | 책자치위원회 급조치사항 | | |
| ェ ー 학교장 긴급조치 사항 | 개최일시 | |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치료상황 | [|] 미치료 [|] 치료중 | | 로완료 |
| 치료 조치 및 계획 | 치료기관 | [|] 학교폭력관 | 련기관 [|] 민간단체 [| [] 병원 |
| | 조치사항 | [|] 심리상담 |] 일시브 | - 보호 [] ; | 병원치료 |
| | | | | | | |
| | 기초생활수급자 | [|] 예 [|] 아니오 | | |
| | 한부모 가정 | [|] 예 [|] 아니오 | | |
| 가해학생 생활환경 | 기타(1) | [|] 예 [|] 아니오 | | |
| 기에릭성 성탈선정 | 7 E ·2 | [|] 예 [|] 아니오 | | |
| | 기타② | [|] 예 [|] 아니오 | | |
| | 추가사항 | | | | | |
| | | | | | | |
|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 가입 [|] 미가입 | | |
| 가해학생 보험가입 여부 | 보험사고접수번호 | | | | | |
| 7M - 0 - 10 11 VIT | 보험담당자명 | | | | | |
| | 담당자연락처 | | | | | |
| | 진행상황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총 괄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 표명길

기 획 ____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팀 장:김은령

집 필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대 리:심태호

대 리:장영준 대 리:김성만

학교안전공제회 업무편람

■ **인쇄 · 발행일** : 2014년 6월

■ **발 행 처**: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 **발 행 인**:이사장 김 명 훈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경상남도교육청 내)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우편번호: 641 - 719)

○ 전화번호 : 268-1579~81, 전송 261-1905

ㅇ 홈페이지: http://kn.ssif.or.kr